발 간 등 록 번 호
11-1550000-000169-01

# 문화재 현상변경 실무 안내집

문화재청

# 문화 유산 헌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1.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1997년 12월 8일

# 차례


1 관련법령 해설 및 FAQ ····· 5

2 현상변경허가 불이행 등 훼손 사례 ····· 23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처리 기준 ····· 37

4 서울특별시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업무 처리요령 ····· 69

5 파주시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업무 처리요령 ····· 81

6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단 및 처리지침 ····· 85

7 업무처리흐름도 ····· 93

8 현상변경 허가처리 흐름도 ····· 94

9 현상변경허가 처리절차도(현행) ····· 95

10 현상변경허가 처리절차도(위임대상) ····· 96

11 현상변경허가 처리절차도(위임후) ····· 97

12 용어설명 ····· 99

13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보호법 발췌 조문 ····· 113

# 관련법령해설 및 FAQ

(사적 제209호 사릉)

## 1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은?

문화재(보호물 · 보호구역 포함, 이하 같음)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법 제2조의2). 문화재 원형유지란 문화재의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주변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임의로 파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 2 현상변경 행위의 구분은?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는

① 당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것을 포함)자체의 현상변경 행위(천연기념물을 표본 · 박제하는 행위 포함)와 ② 당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

➔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 (법 제44조 5항) 문화재 자체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의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포획, 채취, 사육하는 행위 등 문화재 보호관리 행위와 공간에서의 지형 · 지세, 식생, 경관과 환경의 변화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 행위는 당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와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 보존에 지장을 주고 그 모양 · 성질 · 상태 등이 달라지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 · 정비 · 복구 ·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 · 채취 · 사육하거나 표본 · 박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 · 관로 · 전선 · 공작물 ·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 · 간척 · 굴착. · 천공 · 절토 · 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 화학물질 ·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 · 분뇨 · 폐수 등을 살포 · 배출 ·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의 사육 · 번식 등의 행위

아. 토석 ·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 · 반입 · 반출 · 제거행위

자. 광고물등의 설치 · 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행위

**②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 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 제2항 영 제4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 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 화학물질 ·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 증설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 · 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3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처리 절차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시 · 군 · 구 문화재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허가신청서 작성 (시 · 군 · 구 문화재담당과에 제출) → (시 · 도 문화재담당과 경유) → 문화재청 접수 → 관계전문가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 허가여부 통지(시 · 도〈시 · 군 · 구〉 → 신청인)

### 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작성 제출

건설공사 등 현상변경행위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별지 제18호 서식〉)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문화재(명칭, 종별〈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국보, 보물 등〉, 지정번호, 수량〈지정면적 등〉, 소재지〈보관장소〉), 보호구역 · 보호물, 신청사유, 현상변경등의 부분, 현상변경등의 내용, 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사담당자(성명, 기술자 · 기능자 · 수리업자등록번호, 주소), 착공 및 준공예정연월일(착공, 준공), 소요경비, 재원(국비, 지방비, 개인 부담등), 기타사항 등

이때 설계도서(건물배치도, 현황도, 계획도,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종 · 횡단면도, 지붕 앙시도 등), 현장사진(원경〈신청지 문화재〉, 전경, 근경〈연결사진〉 등), 토지 및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 사업계획서(위치, 규모〈대지.부지면적, 건물동수,건축면적, 연면적, 건물높이, 건물구조〉), 위치도(대상문화재와 신청지역, 이격거리 표시 등), 기타 신청사유, 건축물관리대장 등 현상변경 신청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참고 자료를 모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의 용지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전 검토 및 신청서 처리

신청인 이『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의 신청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규정(제20조 제4호)에 의한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변경(천연기념물중 표본 ·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의 6개항목*에 따른 검토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관계전문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의3〈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문화재보호법 제55조(시 · 도 지정문화재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이 경우,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문화재영향여부검토 6개항목**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 공사에 해당하는가?
2.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3.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이상의 굴착 행위인가?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 화학물질 ·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 증설하는 행위(기존의 지형 · 지세변경 여부 포함)인가?
4. 기타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5. 건설공사와 관련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4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에 의거 마련된 시 · 도조례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
6. 현상변경 처리 기준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이 문화재현상변경등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경우는 시 · 군 · 구청장이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위임된 권한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인 · 허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전문가의 검토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사전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관련서류 일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흐름도 참조〉

## 처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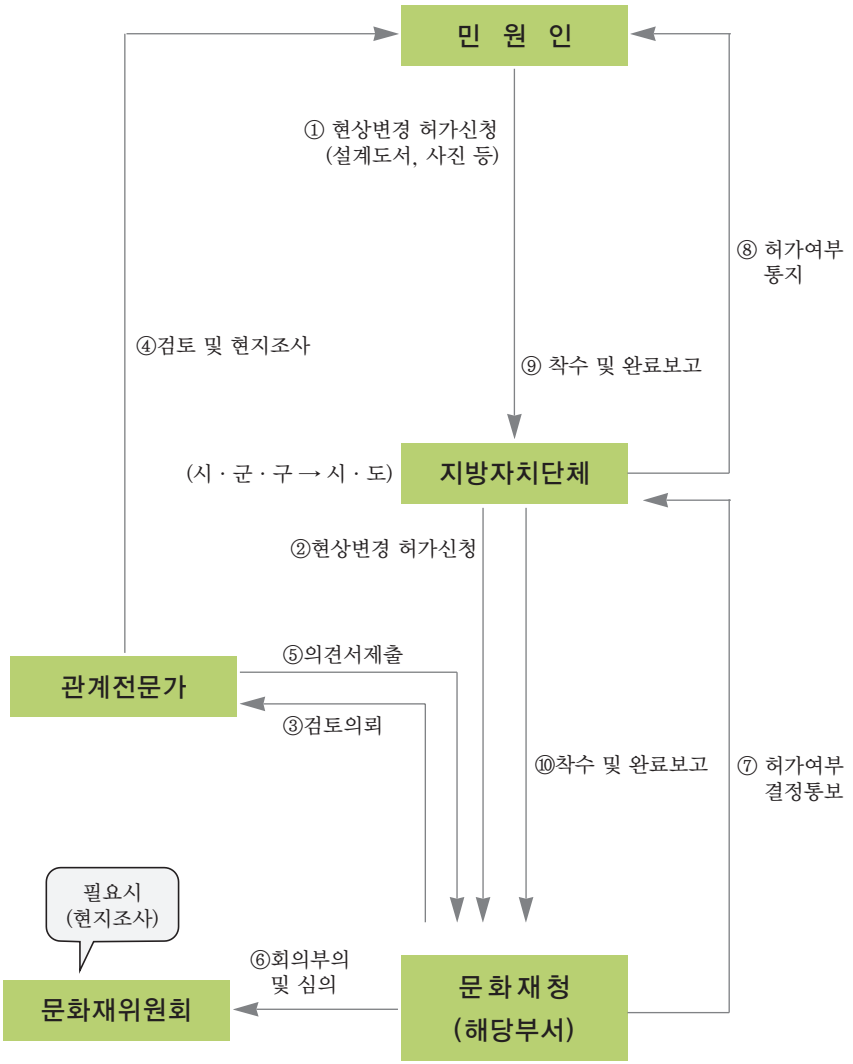

### 3. 문화재청장의 신청서류 처리

* 신청서류 접수 → 관계전문가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 허가여부 회신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서류 검토 시 설계서 등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자료를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하고,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여부 결정통지는 신청서 접수처리의 반대 순으로 문화재청장이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현상변경허가신청사항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여부 처리 기간은 허가 신청서 접수부터 허가여부 결정까지 3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출서류 검토결과, 보완 및 관계전문가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문화재위원회 심의일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리기일이 다소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5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기준은?

현상변경 허가 처분을 결정하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문화재보호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별로 관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거나 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성격과 소재한 장소가 각각 다르고 현상변경 행위가 다양하여 허가 처분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형화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 경관보존 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건축 행위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설정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많은 지역부터 관계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 관계전문가 검토 및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문화재별로 현상변경허가 처분 기준을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6 현상변경 허가 처분 전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심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7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에 대한 거리의 기준은?

문화재보호법령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 보호구역 포함)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의 거리"는 도면상의 직선(수평)거리이며,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한 거리입니다.

##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곳에서 현상변경 행위를 할 경우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시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그 보호물의 증축 · 개축 · 재축 ·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를 제외한 다른 현상변경 행위를 할 경우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의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절차에 의한 허가로 갈음됩니다.

## 9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만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 환경권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그 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허가일 뿐 건축행위의 본질의

허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각종 인·허가 관련된 법에 규정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간혹, 건축허가만 받은 후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심의하는 과정 즉 건축허가 이전에 미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후(문화재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영향검토결과, 영향이 없다고 할 경우)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 10 화재등 재해로 인한 재축 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의 적용여부는?

'화재' 등 재해로 소실되어 버린 건물을 기존 건물과 동일 규모로 재축할 때에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현상변경 허가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나 보호물·보호구역에 근접되어 있거나, 기존 건물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오히려 문화재주변 경관보호 차원에서 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11 200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신고만 한 상태에서 실제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명의변경 포함), 문화재보호법 개정이후에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문화재보호법 개정되기 전(2000.1.12)까지 구체적인 건축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신법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건립하여야 합니다.

## 12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컨테이너 설치도 현상변경 행위인가?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 · 같은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이지만 이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어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현상변경행위에 해당됩니다.

## 13 이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지역 범위내에서 다른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다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범위 내에서 원래 허가받은 건물에 부속되는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4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건립한 건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원래 허가여부를 결정할 당시에 건물용도에 대하여 검토한 후 허가를 한 사항이므로 건물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5 문화재(보호물 · 보호구역 포함)주변지역의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문화재보존 영향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청취의 주체는?

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 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주체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 ·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

## 16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란 무엇인가?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정의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17 각종 건설공사 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결과 '해당없음' 이란 의견서가 첨부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검토한 내용이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는 의견이 제시 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관계전문가 1인이라도 영향이 있다고 검토하였을 경우에는 시 · 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18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관계전문가"의 범위에는 비전공자와 관련학과이지만 해당 문화재와 전공분야가 관련이 없는 전공교수도 포함되는가? (예. 조경학과의 현대조경 전공자, 사학과의 서양현대사 전공자, 건축학과의 현대건축 전공 등)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의3 제1항에서 관계전문가의 범주를 정한 취지는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전문가의 검토는 당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1항 제3호는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이 없는 전공 교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9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5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전에 지표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조사 보고서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문화재보존 영향 평가를 거쳤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당해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일 뿐, 문화재 주변경관 보존에 대한 영향 평가는 아니므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20 시 · 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권자는 ?

시 · 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시 ·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의 규정과 각 시 · 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각 시 ·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으므로 시 ·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권은 각 시 · 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해 각 시 ·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 21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가 중복 되어 있는 경우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

문화재보호법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각 시 · 도지사가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 · 도지정문화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거쳐 각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22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국가지정문화재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서의 대상 문화재에 모두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문화재로부터 신청지역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문화재 담당과에서 동 업무를 주관하고, 담당부서간의 업무협의를 거쳐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됩니다.

## 23 '가지정' 문화재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가지정문화재도 문화재보호법 제32조(준용)의 규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와 같이 문화재청장의 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24 가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절차는 ?

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절차 및 처리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절차 및 처리와 동일합니다.

## 25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 절차 및 처리기간은 현상변경 허가사항과 같습니다.

## 26 현상변경 허가의 착수 및 완료행위는 어떻게 하나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착수 · 완료)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 · 군 · 구(시 · 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7 현상변경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 ?

현상변경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권자가 청문을 실시합니다(법 제79조의2).

청문이란 행정기관이 규칙제정이나 행정처분 또는 재결(裁決) 등을 행하는데 그 필요성 ·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대방 · 이해관계인 · 증인 · 감정인 등의 변명이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 28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규정(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 보호구역과 죽은 천연기념물 포함)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89조제 1항).
그리고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에 속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89조 제2항).

## 29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기간 내 허가사항에 대한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

신고의무 기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93조 과태료 제3항).

## 30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의 처벌은 ?

현상변경 착수 및 완료에 대해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91조 관리행위방해등의 죄).

## 31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무허가 행위나 신고 의무의 위반행위를 한 때의 처벌은 ?

실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법 제94조 양벌규정).

## 32 현상변경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구제는 무엇이 있나요 ?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구제는 재심청구와 행정쟁송이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현상변경 불허처분을 받은 사항을 수정 변경하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심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결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 합니다.

행정쟁송은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행위 불허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상급기관에 청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사적 제144호 벽제관지)

# 사례1 : 자치단체 관련 부서간 사전 업무협의 없이 도로개설

## 1. 문화재 현황

- 유　형 : 용장산성(사적 제126호)
- 소재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 연　혁 : 몽고침략에 항거하여 궐기한 고려의 삼별초군이 원종11년(1270)까지 대몽항쟁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임.

##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2001. 9. 29 ~ 2003. 10. 27기간 중
- 훼손내용 : 성곽이 해안으로 내려오는 지역 약 50m 산자락을 V자형으로 절개 · 굴착하여 폭 8m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성이 멸실됨.
- 훼손경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둔전간 농 · 어촌도로 확 · 포장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시행하여 토성을 훼손함.

## 3. 조치 사항

- 터널을 설치후, 터널 상부는 성토하여 원지형 및 성벽 복원 방안 강구토록 조치
- 용장산성 전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 · 활용으로 재발방지책 마련 요청
- 관련자에 대하여 자체감사결과 문책(훈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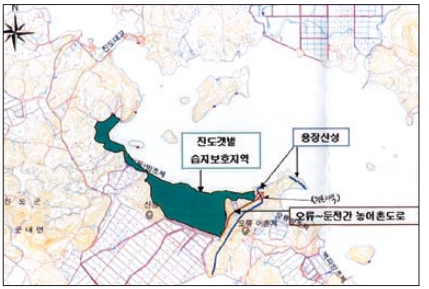

# 사례2 : 복원공사 진입로 개설을 위한 문화재 임의 해체

**1. 문화재 현황**

- 유　형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 연　혁 : 백제토성을 조선 광해군13년(1621)에 석성으로 개축하고 인조2년(1624)에 대규모로 수축 함.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2002. 8. 7 ~ 2002. 8. 10
- 훼손내용 : 산성 연주봉 치성 일부를 무단으로 해체 함.
- 훼손경위 : 산성 복원공사중 시공자가 자재운반 진입로가 없고 추가운반비 절약 등의 이유로 공사용 임시도로 개설을 위하여 치성일부를 인위적으로 해체 함.

**3. 조치 사항**

-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 후 즉시 관계전문가의 현지지도 아래 원상복구 조치.
- 시공회사와 수리기술자에게 각각 행정제제(영업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및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촉구, 현장대리인 현장 상주를 강화함.

# 사례3 : 자치단체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유적과 연계된 산림 훼손

## 1. 문화재 현황

- 유　형 : 익산토성(사적 제92호)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 연　혁 : 작은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산성으로 흙과 돌을 사용하여 쌓았으며, 축성 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추정하고 있음.

##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2002. 3. 29 ~ 2003. 6. 26
- 훼손내용 : 토성 보호구역 연접 500m 이내 산림훼손.
- 훼손경위 : 자치단체에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하면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만 검토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500m이내 현상변경 허가행위를 검토하지 않아 유적과 연계된 산림을 훼손함.

## 3. 조치사항

- 공사중지 후 지표조사 실시 및 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
- 산림 형질변경 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 사례4 : 문화재 지정구역내 무단 토지형질 변경

## 1. 문화재 현황

- 유　형 : 파주가월리 · 주월리 구석기유적(사적 제389호)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주월리
- 연　혁 : 한탄강~임진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 가운데 하나로, 4~5만년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생각되며, 출토 유물에는 양면 가공석기(주먹도끼), 찍개, 긁개, 몸돌 따위와 크고 작은 석기재료들이며, 당시 도구 제작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들 임.

##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2002. 9. 11
- 훼손내용 : 사적지 41,590㎡ 중 유적 상단부의 임야 약 3,000㎡를 논으로 무단 형질변경 하여 유적이 훼손됨.
- 훼손경위 : 토지소유주가 2002년 3월 문화재현상변경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밭을 논으로 개간 함.

## 3. 조치사항

- 각 시 · 도지사에게 문화재 보존 · 관리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함.
- 구역내 사유지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보상완료 후 훼손지역 유적은 발굴조사 추진 예정임.
- 훼손행위자에 대한 고발 조치(파주시) 및 벌금 처분

# 사례5 : 서류 검토로만 이루어진 관계전문가의 문화재 영향 평가

**1. 문화재 현황**

- 유　형 : 파주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사적 제148호)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 연　혁 : 20여기의 탁상식 고인돌과 선사시대 움집터가 함께 발견됨. 집터는 B.C. 7세기경으로 보이며, 고인돌은 이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음.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2003. 12. 24.
- 훼손내용 : 사적지 주변 500m 이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임야를 과다하게 절개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시킴.
- 훼손경위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문화재 영향 평가시 관계전문가가 신청된 서류만 검토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 제출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야기된 문제임.

**3. 조치사항**

- 각 시 · 도지사에게 문화재 영향 평가를 할 때 관계전문가의 현지확인 필요 여부 등 및 세심한 설계도서 검토실시 하도록 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 신청 등 보존방안 강구하도록 함.

# 사례6 : 허가 없이 비전문가에 의한 도자기 파편 수거 및 살포

**1. 문화재 현황**

- 유　형 :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사적 제314호)
- 소재지 : 경기 광주시 퇴촌면외
- 연　혁 : 조선시대 500년간의 도자생산 중심지인 도자문화의 보고 임.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2001. 8. 18.
- 훼손내용 : 지표에 흩어져 있는 도자기편을 무분별하게 수거하고 산포하여 유물의 자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 훼손경위 : 도자기 행사의 일환으로 도자기편 수습체험을 기초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도편을 수거하였으며 이에 대해 언론과 학계에서 비난 성명이 잇따르자 수집한 백자편을 당초 수거 지역이 아닌 임의의 지역에 재 살포하여 문제는 더욱 확대됨.

**3. 조치사항**

- 관할 자치단체에 실태조사와 수집된 백자편들의 학술적 가치 평가를 위한 학술용역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도 · 감독 기관에 엄중주의 및 재발 방지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백자편 보존 및 활용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함.

# 사례7 : 문화재 관리자와 이용자의 갈등

**1. 문화재 현황**

- 유　형 :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전라남도 기념물 제180호)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서유리
- 연　혁 : 내륙지방에서 처음으로 약 1억년 전의 화석층으로 3개의 층에서 육식공룡인 코알라사우루스로 추정되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됨.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2003. 11. 21.
- 훼손내용 : 공룡발자국 화석지 하단부 약 10㎡ 가량 훼손 됨.
- 훼손경위 : 훼손신고 2~3일전 화석지내 출입을 금지 시키는 관리인과 탐방객이 거칠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이들의 소행으로 추측되나 확인이 어려움.

**3. 조치사항**

- 추가훼손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 출입 통제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훼손된 화석편은 전시자료로 활용하고 조속히 사유지를 매입하여 유적을 보존토록 함.

# 사례8 : 문화재 소유자의 보존의지 부족

## 1. 문화재 현황

- 유　형 : 제천 엽연초생산조합구사옥(등록문화재 제65호)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명동
- 연　혁 : 현관의 포치(출입구) 등 정면성을 강조한 근대적 분위기를 보이는 업무시설용 목조건축물

##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2003. 9. 13
- 훼손내용 : 현관 포치부분 및 지붕이 훼손 됨.
- 훼손경위 : 건물소유자가 태풍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고 주장함. (등록말소 요청)

## 3. 조치 사항

- 건물소유자가 보존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사례9 : 목조문화재 방연제 과다 도포

**1. 문화재 현황**

- 유　형 : 목조문화재
- 연　혁 :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초기 발화를 지연시키는 방연제를 주요 목조문화재에 도포함.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2000. 10. 30
- 훼손내용 : 마루 하부 일부에서 습윤 상태를 지속함.
- 훼손경위 : 1984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도포하였으나 2000년에는 한 건물에 과다포로 부작용이 일부 나타남.

**3. 조치 사항**

- 도포 방법 등에 대한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 건조한날 10℃ 이상에서 도포실시하며 청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회도포시 48시간 건조 후 차회 도포함
  - 도포중이라도 주변습도가 70% 이상되면 공사를 중지함
- 당시 현장대리인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 조치함.

# 사례10 : 문화재수리 전통기술 변형시공

## 1. 문화재 현황

- 유형 : 목조문화재

##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2001년
- 훼손내용 : 목조문화재 지붕공사 산자엮기 시 전통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 문화재 수리 전통기술 전승에 소홀.
- 훼손경위 : 시공의 편이성, 공사비 절약, 공기의 단축을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전통 시공법을 일부 변형시킴.

## 3. 조치 사항

- 문화재보수공사 시 전통적인 재료의 사용과 전통 기법대로 시공하여 문화재수리 기술 전승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
- 공사감독관에게 감독주의 촉구하고, 현장대리인은 교체함.
- 편법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비 차액은 환수 조치함.

# 사례11 : 문화재수리공사 현장관리 소홀로 문화재 소실

**1. 문화재 현황**

- 유　형 : 영암집영재(전남민속자료 제16호)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 연　혁 : 서당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19세기 말 건립됨. 본채(집영재), 대문채, 부속채로 이루어져 있음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1999년
- 훼손내용 : 문화재보수공사 중 화재가 발생하여 문화재(본채)가 소실됨.
- 훼손경위 : 문화재보수공사작업인부들이 현장에서 기거하면서 현장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를 초동진화에 실패하여 문화재가 전소됨.

**3. 조치 사항**

- 문화재수리업체 및 현장관계자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6월)
- 공사감독관에게 주의 조치

# 사례12 : 각종 인·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허가 없이 시행한 건축행위

**1. 문화재 현황**

- 유　형 :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천연기념물 제250호)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교하면 김포시 한강변 충적퇴적지역
- 연　혁 : 강(江) 하류의 발달한 습지와 삼각주, 강변의 광활한 논, 갈대 등이 재두리미 등 철새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임.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2003. 2. 7 ~ 2003. 9. 23
- 훼손내용 : 강(江) 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주변 약 80m 이격된 하천과 강(江)이 만나는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공사를 함.
- 훼손경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건립을 위한 제반 인·허가를 받았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공사를 추진 함.

**3. 조치사항**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중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 지시

# 사례13 :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착오로 인한 고도제한 기준 잘못 적용

## 1. 문화재 현황

- 유　형 :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 연　혁 : 조선조 연산군의 억불정책으로 폐사(廢寺)되고 일제 강점기에 공원으로 변함.

## 2. 훼손 현황

- 훼 손 일 : 2003. 9. 29
- 훼손내용 : 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 경관보존을 위한 고도제한 적용기준을 벗어난 건축행위
- 훼손경위 : 자치단체 건축허가 시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를 잘못 적용하여 고도제한 앙각을 검토한 관계로 건물 높이를 높게 심의함.

## 3. 조치사항

- 건축 허가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 등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 앙각 적용이 잘못된 건물 부분은 상급 지도감독청이 검토 후 처리토록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적용법규 해석 및 교육)을 강구토록 조치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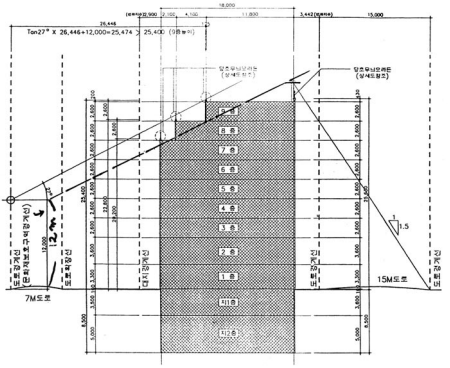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처리 기준

(사적 제64호 화왕산성)

| 연번 | 대 상 문 화 재 | 소 재 지 | 비 고(시행) |
|---|---|---|---|
| 1 | 사적 제11호 광주 풍납리 토성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기념 86743-919 (2001. 4. 16) |
| 2 | 사적 제225호 초지진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기념 86743-3505 (2001. 11. 25) |
| 3 | 사적 제339호 경기전 | 전라북도 전주시 | 사적 86743-229 (2002. 4. 24) |
| 4 |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 | 사적 86743-8143 (2002. 7. 23) |
| 5 | 사적 제3호 화성 | 경기도 수원시 | 사적86743-395 (2002. 5. 21) |
| 6 |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사적86743-422 (2002. 5. 21) |
| 7 | 사적 제93호 양산 북정리 고분군 | 경상남도 양산시 | 사적86743-448 (2002. 5. 24) |
| 8 | 사적 제94호 양산 신기리 고분군 | 경상남도 양산시 | 사적86743-448 (2002. 5. 24) |
| 9 | 사적 제304호 소쇄원 | 전라남도 담양군 | 사적86743-842 (2002. 7. 23) |
| 10 | 사적 제62호 대구달성 | 대구광역시 중구 | 사적86743-1366 (2003. 7. 7) |
| 11 | 사적 제144호 벽제관지 | 경기도 고양시 | 사적86743-1366 (2003. 7. 7) |
| 12 | 사적 제206호 융릉 · 건릉 | 경기도 화성시 | 사적86743-1539 (2003. 7. 21) |
| 13 | 사적 제392호 여천 선소유적 | 전라남도 여수시 | 사적86743-1761 (2003. 8. 19) |
| 14 | 사적 제207호 홍릉 · 유릉 | 경기도 남양주시 | 사적86743-1769 (2003. 8. 21) |
| 15 | 사적 제209호 사릉 | 경기도 남양주시 | 사적86743-1769 (2003. 8. 21) |
| 16 | 사적 제218호 압량유적 | 경상북도 경산시 | 사적86743-1777 (2003. 8. 21) |
| 17 | 사적 제411호 대구 진천동 입석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사적86743-1778 (2003. 8. 21) |
| 18 | 사적 제300호 경산 임당동 고분군 | 경상북도 경산시 | 사적86743-215 (2003. 10. 12) |
| 19 | 사적 제331호 경산 조영동 고분군 | 경상북도 경산시 | 사적86743-215 (2003. 10. 12) |
| 20 | 사적 제80호 창녕 교동 고분군 | 경상남도 창녕군 | 사적86743-310 (2003. 10. 21) |
| 21 | 사적 제81호 창녕 송현동 고분군 | 경상남도 창녕군 | 사적86743-310 (2003. 10. 21) |
| 22 |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적86743-807 (2003. 12. 29) |
| 23 |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 울산광역시 중구 | 사적과-1155 (2004. 3. 2) |
| 24 | 사적 제442호 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 대구광역시 중구 | 사적과-1165 (2004. 3. 2) |
| 25 | 사적 제202호 장릉(章陵) | 경기도 김포시 | 김포시 고시 제2004-12호(2004. 3. 11) |
| 26 | 사적 제368호 보길도 윤선도 유적 | 전라남도 완도군 | 사적과-1786 (2004. 3. 29) |
| 27 |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사적과-1166 (2004. 3. 2) |

## 1. 사적 제11호 광주 풍납리 토성(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1. 4. 16)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토성내부지역 | • 소규모 건축물 신축 : 건물높이 지상15m이내 단, 터파기 공사는 2m 이내로 하며, 문화재전문공인기관의 조사를 거쳐 실시하고 유구가 확인될 시에는 공사를 금지하며 파일 박기는 금함)<br>• 기존건물 증 · 개축 : 15m이하 건축물은 15m 까지, 15m 이상 건물은 기존건물높이 범위 내에서 개축<br>•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은 불가 | (2003. 6. 27) 옥탑포함 사항 제외 결정 |
| 토성외부지역 | • 토성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는 보호구역 경계 지상 7.5m지점에서 앙각 27°선 이내로 건축 제한<br>※ 다만, 토성 연결구간과 해자 추정지역(토성 외곽 50m범위)과 시굴조사 결과 유적층이 확인되는 지역에 대한 허가권한은 제외 | |

광주 풍납리 토성 근경

## 〈광주 풍납리 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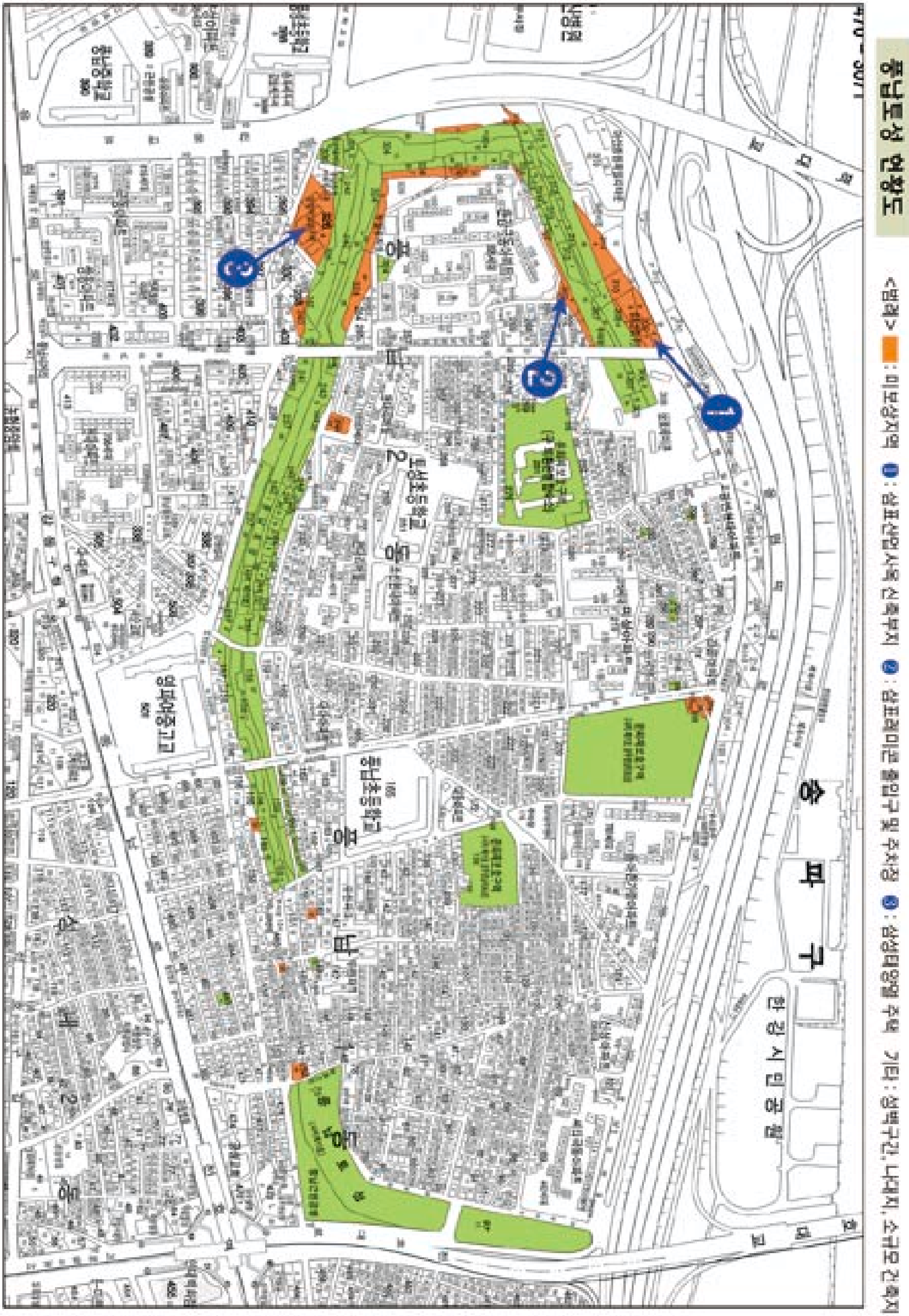
풍납토성 현황도
<범례> : 미보상지역 1 : 삼표산업사옥 신축부지 2 : 삼표레미콘 출입구 및 주차장 3 : 삼성태양열 주택 기타 : 성벽구간, 나대지, 소규모 건축지
송파구
한강시민공원

## 2. 사적 제225호 초지진(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1. 11. 25) *강화외성 처리기준 참조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남 측 | • 200m이내 지역 : 초지진 안전시설 및 관광객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벤치 등)<br>• 201m~강화대교지역 : 1층, 5m이하(한옥의 경우 높이 6m이내) · 건폐율 30%이내<br>• 강화대교 밖 지역 : 2층, 높이 8m이하 · 건폐율 40%이내 | |
| 북 측 | • 외성 30~50m이내 : 문화재 보호관리시설, 기존건물의 개보수<br>• 외성 51m~100m : 기존건물의 개보수, 신축은 1층 규모(높이 5m이하) · 건폐율 30%이내<br>• 외성 101m 밖 : 기존건물의 개보수, 신축은 2층 규모(높이 8m이하) · 건폐율 40%이내<br>* 단, 매립지역도 51~100m지역 적용 | |
| 북서측 | • 거리별, 건축 규모별 '북측'과 같이 관리 | |
| 기 타 | • 해변으로부터 30m 범위를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함<br>건물신축 불가 | |

초지진 원경

근경

초지진 전경

〈초지진〉

③
④
①
②
구분
허 용 건 축 용 도
①
초지진 안전관리 시설 및 관광객 편의 시설(주차장, 화장실, 파고다, 옛적 집)
②
고층 포함한 높이 10M이내 중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③
높이 10M 이내 중층 규모의 단독 주택, 근린생활시설, 주민 안전시설
④
중층 포함한 높이 10M이내 규모의 창고시설

## 3. 사적 제339호 경기전(전라북도 전주시 ; 2002. 4. 24)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경 기 로 지구 | • 지상2층, 높이 10m 이하, 한옥 또는 한옥형 | |
| 전통한옥 지구 | • 지상1층, 높이 7m 이하, 목조 한옥 | |
| 전통문화 지구 | • 지상3층, 높이 15m 이하, 한옥 또는 한옥형 | |
| 향 교 지구 | • 지상1층, 높이 7m 이하, 목조 한옥<br>* 단, 경기전 동측 도로경계에서 30m 범위 내 지역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 | |

〈경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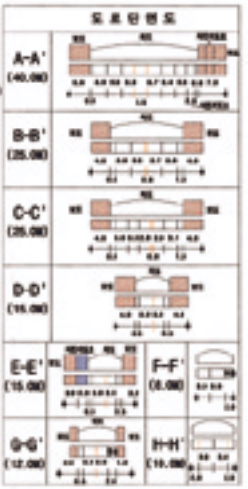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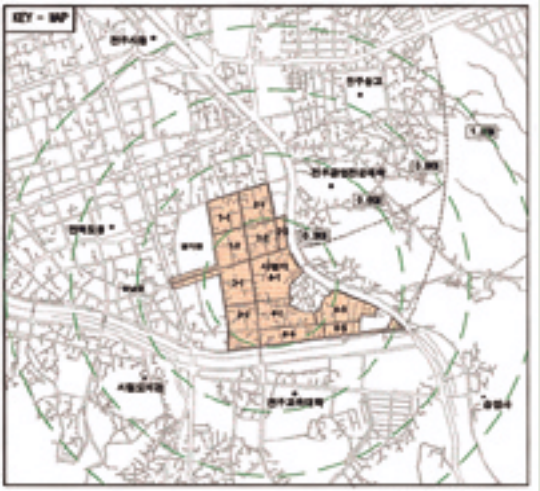

| 항 목 | 지점 | 계 선 방 안 | 연장 (m) | 폭원 (m) | 면적 (㎡) | 개소 |
|---|---|---|---|---|---|---|
| 1.주변기로 및 교차로 | ① | • 주변교차로 체계신호주기 제시 | | | | 10 |
| | ② | • 신호기 설계로 필요한 작업스톱 도로 | | | | 1 |
| | ③ | • 기타주변 개선된 제시로 버전제로 확보 | | | | 1 |
| | ④ | • 철탑등 설계 (2개소) | | | | 2 |
| | ⑤ | • 교차로 운영방안 연결 | | | | |
| | ⑥ | • 태조로 전출입구 고려로 시공중량보고이로 시민부사로로 지원단장제로 | | | | 2 |
| 2.진출입 등 선 | ⑦ | • 태조로 도로확폭 (3a → 10a) | | | | |
| | ⑧ | • 제정북1길 도로확폭 (3a → 11a) | | | | |
| | ⑨ | • 기타사길 도로확폭 (8a → 12a) | | | | |
| | ⑩ | • 전용면적지구내 도시계획도로 제거 | | | | |
| | ⑪ | • 사업지내 보행통행 우선 제시 | | | | |
| | ⑫ | • 도로표점을 정리하여 도로의 특성 부여 | 1,070 | | | |
| | ⑬ | • 도로중앙분리제시 | 1,040 | | | |
| | ⑭ | • 차단기, 보행자겸용도로 설치 | | | | |
| | | - 태조로 태조도로 | 100 | 4 | 2,210 | |
| | | - 기타사길 확폭도로 | 940 | 2 | 1,882 | |
| | ⑮ | • 남부교 확장시 계획적 제시 | | | | |
| | ⑯ |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 계획 반영 | | | | |
| | ⑰ | • 일방우회확로 서측 10a도로 순방 연결 | | | | |
| | ⑱ | • 전용면적에서 입구 차량회전반지름을 충분히 확보하여 grium 기능확보록 변경 | | | | |
| 3.주차시설 | ⑲ | • 주차장 계획 | | | | 3 |
| | | - 주민주차장 3개소 | | | | 5 |
| | | - 공용주차장 5개소 | | | | |
| | | • 법정주차면수 : 200면 | | | | |
| | | • 주차수요 : 추정면 (209대) | | | | |
| | | • 계획주차면수 : 700면 (여유) | | | | |
| | | - 법정주차면수 : 200면 | | | | |
| | | - 개선전에서 주차면수 : 51면 (이용이면, 장애자 10면 포함) | | | | |
| | ⑳ | • 주차장 표제목 | | | | |
| | | •사업지역내 노상주차장에 경우 주간에는 차량정전적용이 시설중심 이용에도록 조치하였음. 이를 위해 기존의 주상주차에를 시행하여 일반주차 장기주차를 장치하도록 노력적극요구를 실시하였음 | | | | |
| 4.대중교통 및 보행 | ㉑ | • 사업지내 도로확보 | | | | |
| | | - 태조로 : D=1.0a, L=1,200a | 1,200 | 4 | 4,140 | |
| | | - 제정북1길 : D=0.3a, L=1,880a | 1,880 | 3 | 5,604 | |
| | | - 기타사길 : D=1.2~2.0a, L=1,700a | 1,700 | 1.2~2 | 3,140 | |
| | | • 보행자 우측도로 클리어 설치로 보행공간 확보 | 450 | 1.5 | | |
| | ㉒ | • 주요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 | | | 12 |
| | ㉓ | • 태정북 1길에 자전거도로분할 제시 (D=2.0a, L=450m) | 50 | 2 | 1,800 | |
| | ㉔ | • 정류장도 주기 설치 | | | | 14 |
| | ㉕ | • 전용면적지구내 도로추가설치 | 120 | 2 | 360 | |
| 5.교통안전 및 기타 | ㉖ | • 교차로 원도 설치 | | | | 3 |
| | ㉗ | • 과태로 가이드레이 (D = 0.0a 이상) | | | | 10 |
| | ㉘ | • 속도제한 노면표시(30km, 양방향) | | | | 4 |
| | ㉙ | • 자전거보관소 설치 (30대주차, 4개소) | | | | 14 |
| | ㉚ | • 일방통행 표지판 설치 | | | | |
| | ㉛ | • 버스정류 설치 조정 | | | | |
| | ㉜ | • 신시간 주차 노상주차장 설치 | | | | 4 |
| | ㉝ | • 분리도 설치 | | | | 18 |
| | ㉞ | • 주요시점 주차안내표지 | | | | |
| | ㉟ | • 주변버스정류시점 설치 | | | | |
| | ㊱ | • 태조로, 제정북1길, 중심버중고정로 주일이 경지구역으로 설정 | | | | |
| | ㊲ | • 공원기사용제한 조치판 설치 | | | | 4 |
| | ㊳ | • 자전거표지시설 설치 | | | | 2 |
| | ㊴ | • CCTV 시스템로 전주시 (방군부로 포함하여 실시하였음 | | | | |
| | | • 실제적공간확인 | | | | |

## 4. 사적 제10호 서울성곽(서울특별시 ; 2002. 7. 23)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보호구역내 | • 성벽 하단에서 최소 6m이상 이격하고, 높이는 성벽 기저부(지대석)보다 높이 않게 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적용 | 사적 86743-8143 2001.12.7 심의 2002.7.23 시행 |

## 5. 사적 제3호 화성(경기도 수원시 ; 2002. 5. 21)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성곽주변 지역 | 지상2층 이하, 최고높이 6.5m(성곽평균 높이 기준) 이하 | |
| 4대문 주변 지역 (150m이내) | 지상3층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펜트하우스 2m 이하 | |
| 팔달문~장안문간 대로변 지역 | 지상4층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펜트하우스 2m 이하 | |
| 화성내부지역 | 건물의 최고높이는 14m(펜트하우스 2m 별도)로 하되, 화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이한 형태의 건물신축(개축 · 증축 등 포함)시는 문화재청과 협의 | |
| 성문, 성벽, 행궁 등 화성 당시의 주요 시설물과 근접된 지역 (예 : 50m 이내) | 문화재청과 별도 협의 | |
| 지하유구 분포가능성이 있는 지역 | 건축행위와 관계없이 사전 유구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 | |
| 팔달산 기슭의 경사면 | 기존 건물의 규모를 준수 | |

## 6.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2. 5. 21)

| 구 분 | 지역 | 이격거리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성벽 기저부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 건물높이(최고높이) : 신청부지와의 이격거리에 따른 앙각적용은 1 : 5 비율을 적용하되, 지역별 세부 사항을 보완함. | | | | |
| 읍성지 북쪽 (북문지 주변) | Ⅰ | 40~70m | 2층 이하(높이 7m) | |
| | Ⅱ | 70~100m | 3층 이하(높이 10m) | |
| | Ⅲ | 100~130m | 4층 이하(높이 13m) | |
| | Ⅳ | 130~150m | 5층 이하(높이 16m) | |
| | Ⅴ | 150~200m | 7층이하(높이 22m) | |
| 읍성지 서북쪽 | Ⅵ | 읍성지 북쪽과 동일기준으로 하되, 인근 화장산 경관보존을 고려, 최대5층 규모 이하로 함 | | |
| 읍성지 서쪽 (서문지 주변) | A | 도로지역 | 도로지역은 향후 도시계획을 재조정하여 성벽으로부터 읍성지 북쪽지역 만큼 이격 권고 | |
| | B | 30~50m | 향후 도로지역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우선 도시계획 조정 전까지는 부득이 1층이하(높이 5m)로 규제 | |
| | C | 50~70m | 2층 이하(높이 7m) | |
| | D | 70~140m | 4층 이하(높이 7m) | |
| | E | 40~200m | 7층 이하(높이 22m) | |
| 읍성지 동쪽 (동문지 주변) | | | 언양읍사무소 및 63뷔페예식장 건물의 성벽쪽 서쪽 정면선을 건축선으로 기준하여 앙각(1:5)비율을 적용<br>남쪽부는 사적으로 지정된 북쪽부와 같이 도로선을 조정 권고 | |
| 읍성지 동북쪽 | | | 앙각(1:5)비율 및 북쪽지역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 | |
| 기타 | 지정되지 않은 성벽 유구 지역 | | 향후 읍성 복원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건축 제한 | |

〈언양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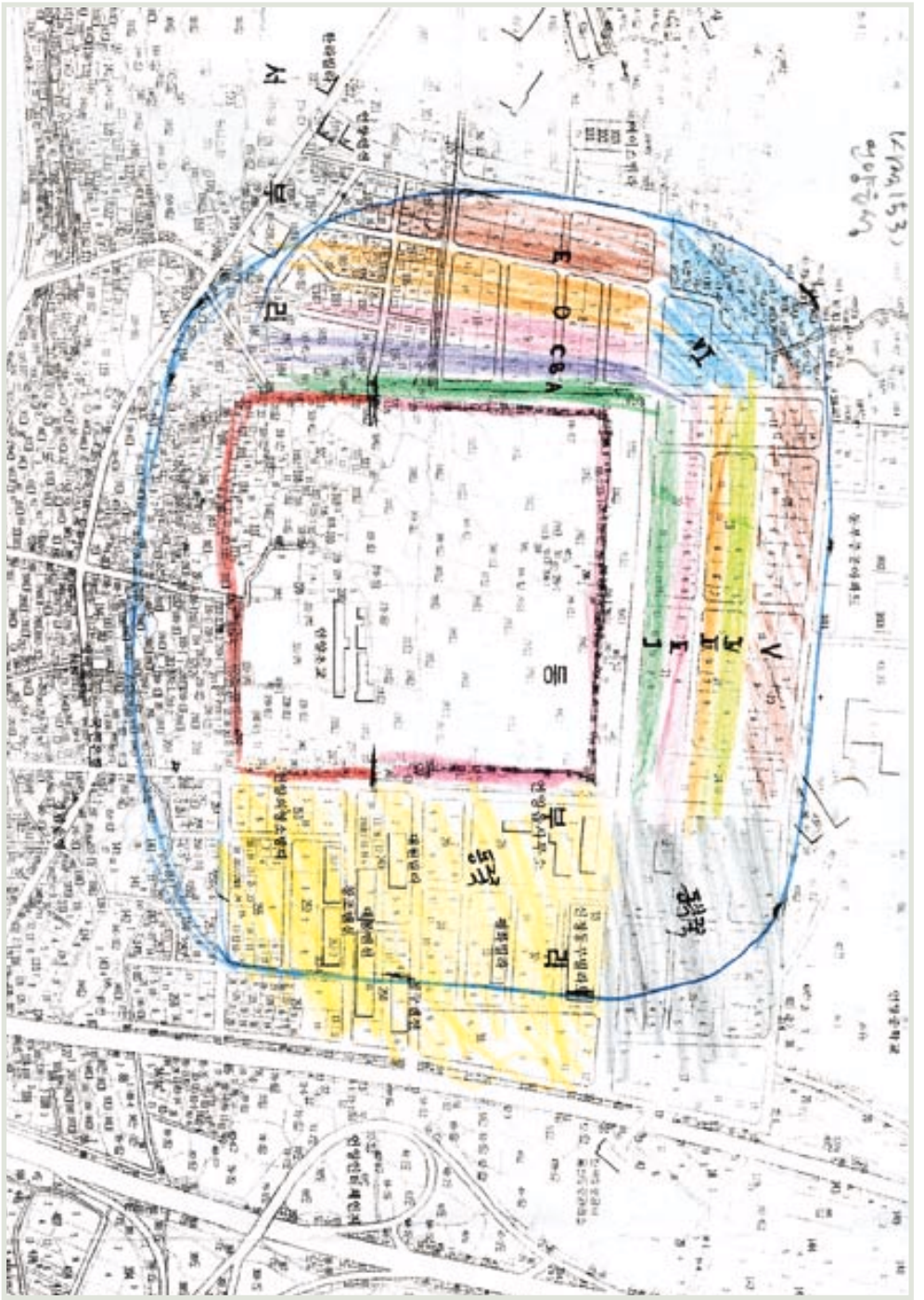

### 7. 사적 제93호 양산 북정리 고분군 (경상남도 양산시 ; 2002. 5. 24)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주도로를 경계로 내부 지역(도면상 표시범위) | • 건축물의 규모는 5층 이하를 기준으로 함. | |
| 대지의 상대고도가 높은 지역 | • 5층 이하에 건축물 최고높이가 해발 65m선을 넘지 않도록 함. | |
| 북정동 고분군 남쪽에 인접한 대지 (도면상 표시범위) | •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 단층규모는 가능. | |
| 공 통 | • 건축 설계 시 건축물의 외관, 재질, 색채 등은 고분군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

### 8. 사적 제94호 양산 신기리 고분군(경상남도 양산시 ; 2002. 5. 24)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주도로를 경계로 내부 지역(도면상 표시범위) | • 건축물의 규모는 5층 이하를 기준으로 함. | |
| 대지의 상대고도가 높은 지역 | • 5층 이하에 건축물 최고높이가 해발 65m선을 넘지 않도록 함. | |
| 북정동 고분군 남쪽에 인접한 대지 (도면상 표시범위) | •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 단층규모는 가능. | |
| 공 통 | • 건축 설계 시 건축물의 외관, 재질, 색채 등은 고분군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

### 9. 사적 제304호 소쇄원(전라남도 담양군 ; 2002. 7. 23)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500m이내 구역 | • 음식점 신축 지양<br>• 기존 음식점의 경우는 건평,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상 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증축 등에 한함. | |

## 10. 사적 제62호 대구달성(대구광역시 중구 ; 2003. 7. 7)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달성 남쪽 달구벌 대로와 서쪽, 북쪽의 간선도로, 그리고 동쪽의 인접구역 | •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10m 이하로 하며, 성벽 외곽 20m 이내 지역은 개별 심의대상 | |
| | • 그밖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20m 이내로 함. | |
| 비산동 400-13번지 등 삼각블록지역 | • 대로변에 위치하고 동일블록 내 기존 건축물(5층규모)과 조화를 고려하여 기존 건물높이(광고탑 제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5층, 20m이내)내에서 건립하도록 함 | |
| 달성 서쪽 및 남쪽 일부 지역에 과거에 고분군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곳 | • 대구광역시에서 전문가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시굴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
| 공 통 | * 이 기준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부를 포함하여 전체 높이를 말하며, 높이 기준은 지반선(GL)으로 하되, 지반선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인접한 도로 높이를 기준으로 함. | |

## 11. 사적 제144호 벽제관지(경기도 고양시 ; 2003. 7. 7)

| 구 분 | | 허가처리 기준 | | 비 고 |
|---|---|---|---|---|
| 벽제관지 전면 ( Ⅰ ) | | 30m이내 지역 | -1층( 5m 이하)<br>*사전 유구확인조사 실시 | (지붕포함, 옥탑 2.5m 별도) |
| | | 31m~고양초등학교 (약100m) | -3층( 9m 이하) | |
| 북서측 | Ⅱ | | -4층(12m 이하) | |
| | Ⅲ | 고양향교 주변지역 | -3층( 9m 이하) | |
| | Ⅳ | 북서측 지역 | -5층(15m 이하) | |
| 기타(Ⅴ)<br>*벽제관지 동측 | | - 5층(15m 이하) | | |
| 임야, 나대지(Ⅵ) | | 신축불가,<br>기존 건물 개 · 보수 범위 내 | | |

〈벽제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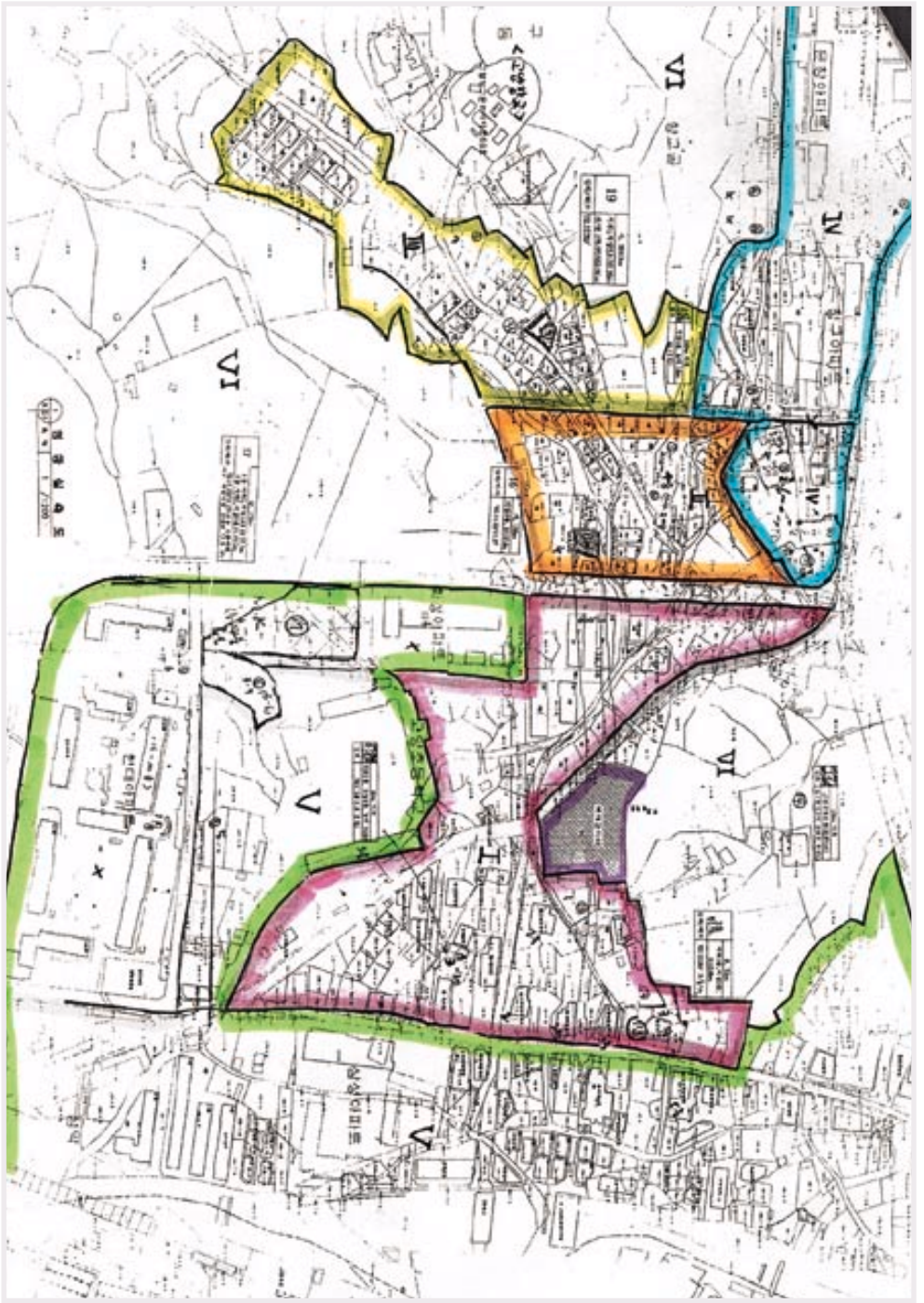

## 12. 사적 제206호 융릉 · 건릉(경기도 화성시 ; 2003. 7. 21)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공통사항<br>(0~500m) | •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는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함<br>• 건물의 외형(지붕)은 한식기와 형태로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제1구역(재실전면, 국도 84호선 내, 배양리 일부지역) | • 재실 전면지역의 84번 국도안 지역은 현 상태에서 보존 관리함<br>• 재실전면(융릉 · 건릉 남쪽)의 임야지역은 사적지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그 결과에 따름(사안별 검토) | |
| 제2구역(수원고읍성, 기안리 홍익대실습 〈능 북서쪽〉) | • 지하유구 분포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표조사 실시 후, 현상변경허가절차를 이행하여 그 결과에 따름(사안별 검토) | |
| 보호구역 경계에서 0~100m 범위 |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그 결과에 따름(사안별 검토) | |
| 보호구역 경계에서 101~200m 범위 | • 지상1층, 높이 6.5m 이하, 건축연면적 150㎡ 이내의 규모로 제한 함 | |
| 보호구역 경계에서 201~500m 범위 | • 지상2층, 높이 8m 이하, 건축연면적 300㎡ 이내의 규모로 제한 함 | |
| 기 타 | * 향후 동 융릉 · 건릉 주변지역(0~500m 범위 내)에서의 건축 등 현상변경 사항 중 지하층 터파기시 시굴조사를 선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별도 검토 후 의견을 회신 예정 | |

〈융릉 · 건릉〉

## 13. 사적 제392호 여천 선소유적(전라남도 여수시 ; 2003. 8. 19)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공통사항<br>(0~500m : 임야지역) | • 임야지역은 원지형을 보존토록 함<br>• 지형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시설물) 신축 · 증축은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 · 보수는 허용토록 함 | |
| 제1구역 : 선소 뒤편(망마산 지역), 남측(세검정 후면 언덕 지역), 북동측(아파트 지역 아래 지역), 해수면 지역 | • 건축물(시설물) 신축 · 증축을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 · 보수는 허용<br>• 건물 외형(지붕)은 한식기와 형태로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제2구역 : 선소 서북측, 북측, 북서측 지역 | • 임야가 아닌 지역은 7층 이하 (옥탑 포함 30m이하)범위 내에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처리 | |
| 제3구역 : 선소 북동측 (보호구역 경계 맞은 편 /182, 181번지 지역 | • 5층 이하, 높이 18m이하(옥탑 포함)범위 내에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처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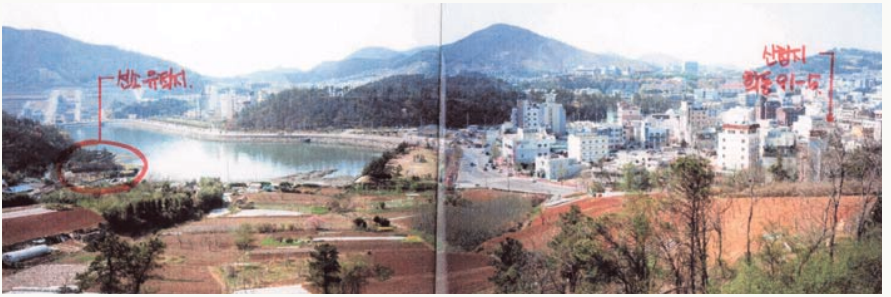

〈여천 선소유적〉

## 14. 사적 제207호 홍릉 · 유릉(경기도 남양주시 ; 2003. 8. 21)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공통사항(0~500m)<br>(임야지역) | • 사적지 주변 경관보존 · 관리를 위하여 원지형 보존 필요.<br>– 건축물(시설물) 신축, 증축 제한<br>– 기존 건축물(시설물) 개 · 보수는 기존 규모 범위 내에서 허용 | |
| 제1구역<br>(재실전면~국도 46호 선내, 목화예식장,금곡동사무소주변, 한양벌, 진곡사 입구등) | • 나대지, 농지에 대한 건축물(시설물) 신축은 사적 주변 경관 보존 · 관리상 제한<br>•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 · 보수는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에서 허용함.<br>– 다만, 개 · 보수 시에도 사적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붕을 한식기와 형태로 개 · 보수토록 지도함.<br>• 증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함.<br>– 다만, 1층으로 기 건축된 시설물을 한식기와형태로 하여 2층 이하(높이 7m이내〈옥탑포함〉)로 하여 증축하고자 할 경우, 현 상변경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
| 제2구역<br>(재실전면〈국도 46호선 밖〉) | • 홍릉 · 유릉 방향 도로변(46호선) : 3층 이하, 높이 10m이하(옥탑포함)<br>• 기타 지역 : 5층 이하, 높이 16m 이하(옥탑 포함) | |
| 제3구역<br>(금곡고등학교 주변) | • 4층 이하, 높이 13m이하(옥탑 포함) | |
| 제4구역 (위 제1, 제2, 제3지역을 제외한 지역) | •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처리 | |

〈홍릉 · 유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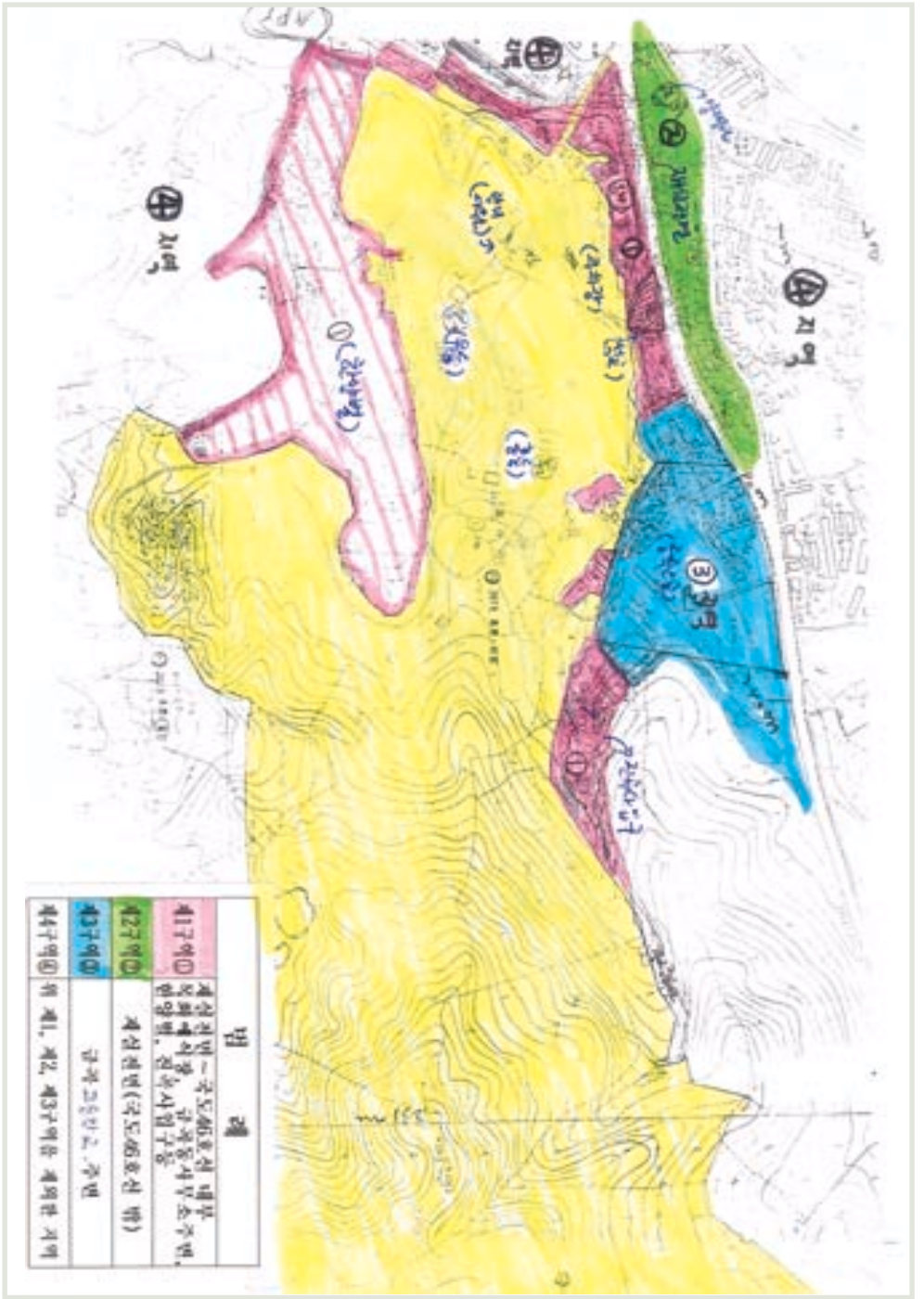

## 15. 사적 제209호 사릉(경기도 남양주시 ; 2003. 8. 21)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공통사항<br>(0~500m) | • 임야지역은 원지형을 보존토록 함.<br>– 신 · 증축을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기존 규모 범위 내에서 개 · 보수 허용<br>• 신 · 증축이 허용되는 제2구역 및 제3구역의 경우에도 지붕은 기와지붕으로 건립하되, 조립식은 환경보존관리상 제외토록 함 | |
| 제1구역(능 주변지역)<br>(재실전면(국도390:송릉천~사릉I.C),<br>남양주기술농업센터주변, 능후면) | • 건축물(시설물) 신축, 증축 제한<br>•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기존 규모 범위 내에서 개 · 보수 허용 | |
| 제2구역(동쪽지역)<br>(송릉천 밖) | • 1층 이하, 건물높이 5m 이하(옥탑포함)<br>– 도로변 : 도로에서 20m이상 이격시켜 건립하되 수목으로 차폐토록 함 | |
| 제3구역(북서지역)<br>(사릉I.C 밖) | • 임야지역(묘지)은 원형대로 보존(신축 · 증축 제한)<br>• 2층 이하, 건물높이 7m이하(옥탑포함) | |

〈사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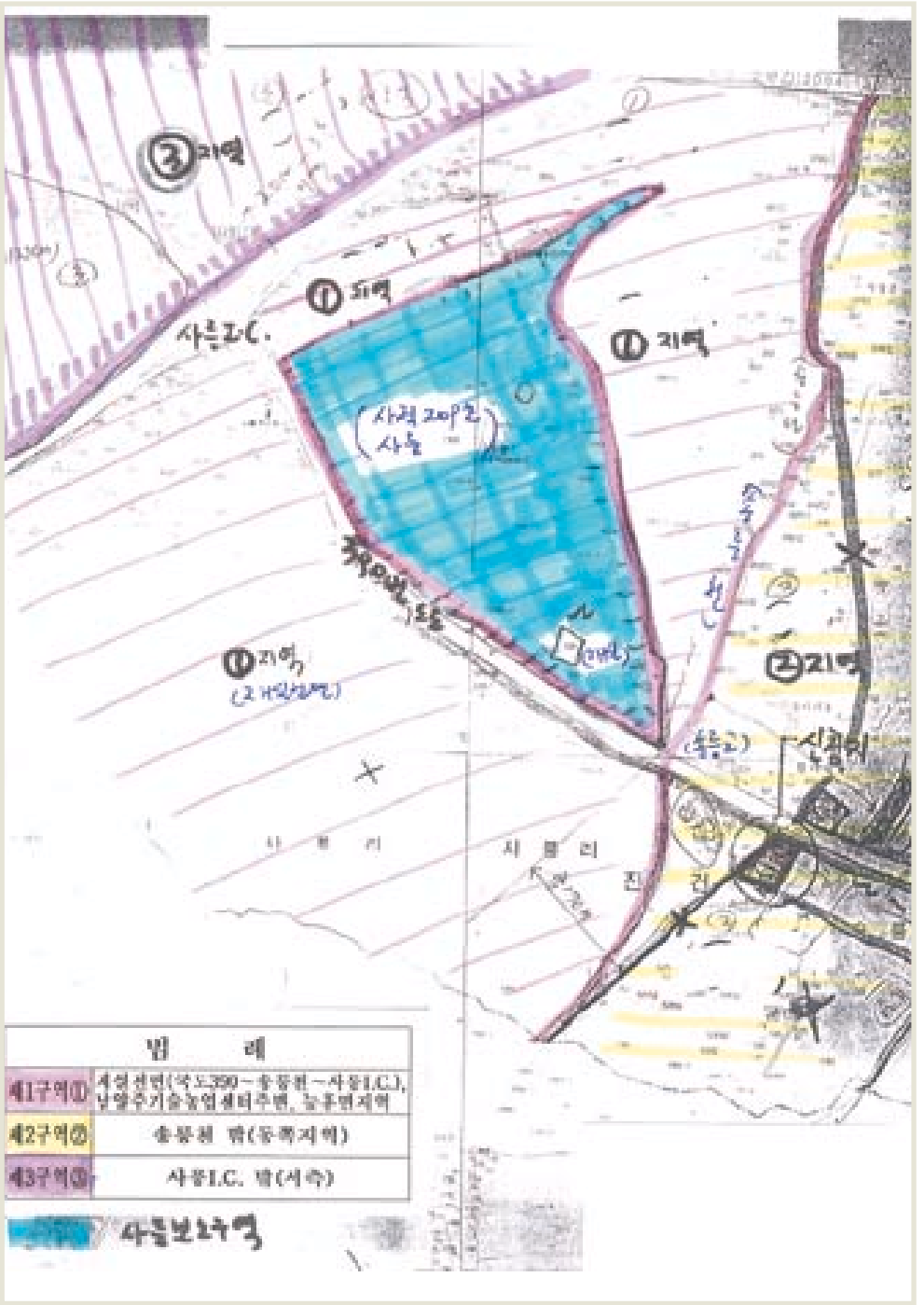
③지역
①지역
사릉I.C.
①지역
사적 200호
사릉
①지역
②지역
사릉리
시릉리
진건
범례
제1구역①
제2구역②
송릉천 밤(동쪽지역)
제3구역③
사릉I.C. 밤(서측)
사릉보호구역

## 16. 사적 제218호 압량유적(경상북도 경산시 ; 2003. 8. 21)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공통적인 사항<br>(0~500m) | • 보호구역 경계에서 인접지역(0~50m 범위)은 사적지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그 결과에 따름(사안별 검토)<br>• 현지여건에 따라 지하유적, 유물 분포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경산시가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굴조사 등 절차를 이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축행위 등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
| 제1훈련장 (압량면 압량리 179 소재) | • 공업지역으로 간주하여 건물높이는 4m를 기준<br>• 보호구역 경계에서 51~100m : 지상2층, 높이 8m이하<br>• 보호구역 경계에서 100~200m : 지상3층, 높이 12m이하 | |
| 제2훈련장 (압량면 내리 389 소재) | • 주택지역으로 간주하여 건물높이는 3m를 기준<br>• 보호구역 경계에서 51~100m : 지상2층, 높이 6m이하<br>• 보호구역 경계에서 100~200m : 지상3층, 높이 9m이하 | |
| 제3훈련장 (진량읍 선화리 948 소재) | • 주택지역으로 간주하여 건물높이는 3m를 기준<br>• 보호구역 경계에서 51~100m : 지상2층, 높이 6m이하<br>• 보호구역 경계에서 100~200m 범위 : 지상3층, 높이 9m이하 | |

## 17. 사적 제411호 대구 진천동 입석(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3. 8. 21)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공통 사항<br>(0~200m) | • 건축물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 함<br>–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도록 함 | |
| 보호구역 경계에서 30m 이내 | • 지상3층, 높이 10m 이하 | |
| 보호구역 경계에서 31~100m | • 지상4층, 높이 13m 이하 | |
| 보호구역 경계에서 101~200m | • 지상5층, 높이 16m 이하<br>* 단, 진천동입석 서편 인접대지(470–22~27번지)는 사적지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그 결과에 따름(사안별 검토) | |

## 18. 사적 제300호 경산 임당동 고분군(경상북도 경산시 ; 2003. 10. 12)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1. 공통사항 | | |
| 50m 이내 | • 2층 이하<br>– 높이는 해발고도 기준으로 고분 기저부보다 낮게 | • 최고높이는 옥탑부 포함<br>• 거리는 절대거리와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구획<br>• 원형이 남아있거나 매장유구 분포가 추정되는 지역은 경산시에서 전문가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시굴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 50m~100m 이내 | • 2층 이하(최고높이 8m) | |
| 100m~200m 이내 | • 3층 이하(최고높이 12m) | |
| 200m~500m 이내 | • 5층 이하(최고높이 18m) | |
| 2. 임당택지 개발지구 | | |
| 단독주택용지 | • 지상 3층 이하 | • 높이 최소화를 위해 계단실 미돌출, 총 건물고 제한<br>• 지붕은 한식기와잇기에 파라팻설치<br>• 건물외부는 자연스런 색상 선정 |
| 근린생활용지<br>상업용지 | • 지상 5층 이하 | |
| 3. 녹지지역<br>(생산 · 보전 · 자연) | • 관련법을 원용하여 현재와 같이 건축을 제한 | |

## 19. 사적 제331호 경산 조영동 고분군(경상북도 경산시 ; 2003. 10. 12)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1. 공통사항 | | |
| 50m~100m 이내 | • 2층 이하(최고높이 8m) | • 최고높이는 옥탑부 포함<br>• 거리는 절대거리와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구획<br>• 원형이 남아있거나 매장유구 분포가 추정되는 지역은 경산시에서 전문가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시굴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 100m~200m 이내 | • 3층 이하(최고높이 12m) | |
| 200m~500m 이내 | • 5층 이하(최고높이 18m) | |
| 2. 임당택지개발지구 | | |
| 단독주택용지 | • 지상 3층 이하 | • 높이 최소화를 위해 계단실 미돌출, 총 건물고 제한<br>• 지붕은 한식기와잇기에 파라팻설치<br>• 건물외부는 자연스런 색상 선정 |
| 근린생활용지<br>상업용지 | • 지상 5층 이하 | |
| 3. 녹지지역<br>(생산 · 보전 · 자연) | • 관련법을 원용하여 현재와 같이 건축을 제한 | |

## 20. 사적 제80호 창녕 교동 고분군(경상남도 창녕군 ; 2003. 10. 21)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공통사항<br>(0~500m:임야지역) | • 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원지형을 보존<br>• 유적 연결지역, 지하유구 분포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시굴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 절차 등 이행 | |
| 제1구역(①) :<br>송현동고분군~교동고분군, 신흥사 주변, 새애골, 이문재저수지 주변 | • 나대지 · 농경지 지역의 건축물(시설물) 신축 · 증축은 사적 주변 경관 보존 · 관리상 제한<br>•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 · 보수는 기존 규모 범위 내에서 허용<br>– 다만, 사적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외관(지붕)을 한식기와형태나 경사지붕형태로 개 · 보수토록 지도<br>• 우회도로 인접지역(교동 77,80번지 일원)의 경우 고분군간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절대높이는 기존건물(경남학원, 2층) 이하 범위로 하여 건립이 가능하며, 최고층수는 5층 이내로 제한 | |
| 제2구역(②) :<br>교동고분군 전면 (남측) | • 5층 이하, 건물높이 16m이하, 한식기와형태/경사지붕<br>– 절대높이는 기존 건물 중 최고높이(건흥빌라 기준)이하로 제한 | |
| 제3구역(③) :<br>송현동고분군 전면 외곽(서측) | • 건물 신축 시 고고학전문가 사전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굴조사 실시<br>• 송현동 고분군 전면도로 연접지역은 도로에서 15m이상 녹지공간으로 확보<br>• 송현동 고분군 전면도로선과 동일레벨 지형에 건축시 2층 이하(높이 7m이내)범위 내에서 절대높이는 기존건물 중 최고높이(남도 숯불갈비 기준)이하로 제한<br>• 기타 지역은 창녕군에서 기준안을 마련하기 이전까지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그 결과에 따름(사안별 검토) | |
| 제4구역(④) :<br>명덕저수지, 창녕향교 주변 | • 건물 신축시 시굴조사 선행<br>• 지상1층(지하층 설치 제한), 높이 5m이하 / 한식기와형태 / 경사지붕<br>– 건물용도는 주택에 한해 허용<br>(근린생활시설(음식점, 숙박시설)등 기타시설은 제한)<br>• 임야지역(묘지)은 원형대로 보존(신축, 증축 제한)<br>•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 · 보수는 기존 규모 범위 내에서 허용<br>– 다만, 사적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외관(지붕)을 한식기와형태나 경사지붕형태로 개 · 보수토록 지도 | |
| 제5구역(⑤) :<br>송현동 고분군 측면(화왕산 계곡 우측) | • 사적 주변 경관 보존관리상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 제한<br>– 다만, 주거용도로 단독주택 (1층, 건물높이 5m이하, 건축면적 25평이내, 경사지붕)에 한해 허용 | |
| 제6구역(⑥) :<br>위 제1, 제2, 제3, 제4, 제5지역을 제외한 지역 | • 보물 제227호 탑금당치성문기비, 보물 제310호 창녕석빙고 검토대상 지역<br>* 교동 · 송현동 고분군 검토대상 지역과 겹치는 대지는 강한 규제를 적용 | |
| | * 건물높이는 옥탑 · 계단탑 · 난간 등을 포함한 각 부분의 최고높이를 적용 | |

## 21. 사적 제81호 창녕 송현동 고분군(경상남도 창녕군 ; 2003. 10. 21)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공통사항<br>(0~500m:임야지역) | • 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원지형을 보존<br>• 유적 연결지역, 지하유구 분포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시굴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 절차 등 이행 | |
| 제1구역(①) :<br>송현동고분군~교동고분군, 신흥사 주변, 새애골, 이문재저수지 주변 | • 나대지 · 농경지 지역의 건축물(시설물) 신축 · 증축은 사적 주변 경관 보존 · 관리상 제한<br>•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 · 보수는 기존 규모 범위 내에서 허용<br>– 다만, 사적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외관(지붕)을 한식기와형태나 경사지붕형태로 개 · 보수토록 지도<br>• 우회도로 인접지역(교동 77,80번지 일원)의 경우 고분군간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절대높이는 기존건물(경남학원, 2층)이하 범위로 하여 건립이 가능하며, 최고층수는 5층 이내로 제한 | |
| 제2구역(②) :<br>교동고분군 전면(남측) | • 5층 이하, 건물높이 16m이하, 한식기와형태/경사지붕<br>– 절대높이는 기존 건물 중 최고높이(건흥빌라 기준)이하로 제한 | |
| 제3구역(③) :<br>송현동고분군 전면 외곽(서측) | • 건물 신축 시 고고학전문가 사전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굴조사 실시<br>• 송현동 고분군 전면도로 연접지역은 도로에서 15m이상 녹지공간으로 확보<br>• 송현동 고분군 전면도로선과 동일레벨 지형에 건축시 2층 이하(높이 7m이내)범위 내에서 절대높이는 기존건물 중 최고높이(남도 숯불갈비 기준)이하로 제한<br>• 기타 지역은 창녕군에서 기준안을 마련하기 이전까지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그 결과에 따름(사안별 검토) | |
| 제4구역(④) :<br>명덕저수지, 창녕향교 주변 | • 건물 신축시 시굴조사 선행<br>• 지상1층(지하층 설치 제한), 높이 5m이하 / 한식기와형태 / 경사지붕<br>– 건물용도는 주택에 한해 허용<br>(근린생활시설(음식점, 숙박시설)등 기타시설은 제한)<br>• 임야지역(묘지)은 원형대로 보존(신축, 증축 제한)<br>•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 · 보수는 기존 규모 범위 내에서 허용<br>– 다만, 사적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외관(지붕)을 한식기와형태나 경사지붕형태로 개 · 보수토록 지도 | |
| 제5구역(⑤) :<br>송현동 고분군 측면(화왕산 계곡 우측) | • 사적 주변 경관 보존관리상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 제한<br>– 다만, 주거용도로 단독주택 (1층, 건물높이 5m이하, 건축면적 25평이내, 경사지붕)에 한해 허용 | |
| 제6구역(⑥) :<br>위 제1, 제2, 제3, 제4, 제5지역을 제외한 지역 | • 보물 제227호 탑금당치성문기비, 보물 제310호 창녕석빙고 검토대상 지역<br>*교동 · 송현동 고분군 검토대상 지역과 겹치는 대지는 강한 규제를 적용 | |
| | *건물높이는 옥탑 · 계단탑 · 난간 등을 포함한 각 부분의 최고높이를 적용 | |

## 22.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 12. 29)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경희궁터(동 · 서측) 내부지역 | • 기존건물 규모 범위 내 보수 개축<br>• 건축예정지역(동측) 건물건립 시는 사전에 유구 확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결과 유구가 확인되면 보존토록 함. | |

## 23. 사적 제320호 울산 병영성( 울산광역시 중구 ; 2004. 3. 2)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공통사항 (병영성 내부지역) | • 건물최고 높이 15m(펜트하우스 2m 별도)<br>• 병영성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이한 형태의 건물의 신축 · 개축 · 증축은 문화재청장 협의 | |
| 성곽주변 주거지역 | • 지상2층, 건물높이 6.5m(인접성곽 평균높이 기준) 이하<br>• 지하굴착 금지, 지붕–경사형 또는 한식기와형 | |
| 성곽주변 남문지(치성) 주거지역 | • 병영성곽 높이(GL기준 12.5m) 이하<br>• 지붕–경사형 또는 한식기와형 | |
| 북문지 · 서문지 · 동문지 | • 인접나대지은 향후 복원계획에 대비하여 건축제한 | |
| 북문지~서문지 성벽외 부지역 | • 인접성벽 최고높이 이하, 최고높이 15m(펜트하우스2m 별도) · 5층 이하로 제한 | |

## 24.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 전문학교 본관(대구광역시 중구 ; 2004. 3. 2)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본관건물 구역 | • 건물최고 높이 30m이하 | |
| 주변 지역 | • 본관 건물높이 14m 기준 앙각12° 적용 | |

## 25. 사적 제202호 장릉(章陵)(경기도 김포시 ; 2004. 3. 11)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장릉산 능선 북쪽 김포시청 전면에 해당하는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 • 원칙 : 사적지 주변 역사문화 경관 보존 관리를 위하여 현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br>– 1종 주거지역 : 4층 이하 건물높이 12미터 이하,<br>– 준 공업지역 : 7층 이하 건물높이 21미터 이하 | 김포시 도시계획 반영 적용 |
| 공원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 | • 2층 이하 건물높이 7미터 이하<br>– 외관을 경사 지붕형태로 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함 | 〃 |
| 장릉산 동쪽 소규모 공단지역 | • 신축을 제한하고 기존 건물 규모 범위 내의 개보수 | |
| 장릉산 남쪽(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능선전면)지역 | • 문화재청장의 별도 허가 | |

※ 김포시고시 제2004-12호(2004년 3월11일)

## 26. 사적 제368호 보길도 윤선도 유적(전라남도 완도군 ; 2004. 3. 29)

### 가. 현상변경처리기준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공통사항<br>(0~500m) | • 사적지 주변 역사문화 경관 보존 관리를 위하여 현 환경 보존<br>– 건축물(시설물) 신축, 증축 제한<br>– 기존 건축물(시설물) 개 · 보수는 기존 규모 범위 내에서 허용<br>• 건물형태는 보길도 자연지형과 조화되게 하며, 조경(식재 및 담장)은 기존의 보길도 자연경관으로 조성되도록 함.<br>※ 세연지 제1 · 2지구는 예외 | |
| 세연지 지구<br>– 제1지구 : 34필<br>– 제2지구 : 29필 | • 신축 : 지상 2층 이하, 건물높이 6.5m 이하<br>• 용도 : 농어가 주택, 어업인공동생활편익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등)<br>• 도로와 인접된 건물배치는 도로변에서 5m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는 보길도 자생 수목을 식재하도록 함.<br>• 공사 시 현재의 지형 · 지세가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함.<br>• 신축건물이 집단화 · 난립화 되지 않도록 적정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으로 건립되도록 함.<br>• 신축 건축형태 및 구조는 표준설계도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음.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향후 재축 · 개축 · 보수 시에 적용되도록 함) | |

## 나. 현상변경허가 지구별 지정조서

| 문화재의 지구별 | 지번별 | | | | 성 명 | 용도지역 | 비 고 |
|---|---|---|---|---|---|---|---|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 |
| 합 계 | | 34필지 | | 25,546 | | | |
| 1지구 | 보길면 부황리 | 25 | 대 | 36 | 강성재 | 자연환경 보전지역 | |
| | 〃 | 26 | 대 | 516 | 강래진 | 〃 | |
| | 〃 | 27 | 대 | 337 | 강성재 | 〃 | |
| | 〃 | 28-1 | 전 | 311 | 강채진 | 〃 | |
| | 〃 | 167-4 | 전 | 202 | 이응진 | 〃 | |
| | 〃 | 167-5 | 전 | 172 | 이응진 | 〃 | |
| | 〃 | 138-1 | 대 | 377 | 강충원 | 〃 | |
| | 〃 | 167-1 | 전 | 2,134 | 박일용 | 〃 | |
| | 〃 | 167-6 | 전 | 196 | 이응진 | 〃 | |
| | 〃 | 168 | 대 | 638 | 용일주 | 〃 | |
| | ' | 168-2 | 전 | 1640 | 〃 | ' | |
| | 〃 | 171-1 | 대 | 367 | 강촌종학 | 〃 | |
| | 〃 | 171-2 | 대 | 843 | 김일남 | 〃 | |
| | 〃 | 179-2 | 대 | 602 | 최훈경 | 〃 | |
| | 〃 | 179-1 | 전 | 906 | 이권철 | 〃 | |
| | 〃 | 180-1 | 묘 | 93 | 최원숙 | 〃 | |
| | 〃 | 178 | 전 | 965 | 이권철 | 〃 | |
| | 〃 | 181-1 | 전 | 370 | 최고임 | 〃 | |
| | 〃 | 182 | 잡 | 377 | 이권철 | 〃 | |
| | 〃 | 183 | 전 | 2,090 | 강성재 | 〃 | |
| | 〃 | 172 | 전 | 545 | 강이곤 | 보전지역 | |
| | 〃 | 173 | 전 | 1306 | 강이곤 | 〃 | |
| | 〃 | 173-1 | 전 | 179 | 강대인외9 | 〃 | |
| | 〃 | 177-1 | 전 | 1,061 | 강덕원 | 〃 | |
| | 〃 | 177-2 | 대 | 205 | 강석근 | 〃 | |
| | 〃 | 176 | 전 | 387 | 〃 | 〃 | |
| | 〃 | 175 | 전 | 36 | 강덕원 | 〃 | |
| | 〃 | 174 | 대 | 800 | 김성우 | 〃 | |
| | 〃 | 184 | 전 | 1,494 | 강성균 | 〃 | |
| | 〃 | 185 | 전 | 3,164 | 강두원 | 〃 | |
| | 〃 | 187 | 전 | 2,304 | 강성근 | ' | |
| | 〃 | 187-1 | 전 | 99 | 이학민 | 〃 | |
| | 〃 | 산10-7 | 임 | 298 | 강대인외9 | 〃 | |
| | 〃 | 산10-8 | 임 | 496 | 강대인외9 | 〃 | |

| 문화재의 지구별 | 지 번 별 | | | | 성 명 | 용도지역 | 비 고 |
|---|---|---|---|---|---|---|---|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 |
| 합 계 | | 29필지 | | 18,713 | | | |
| 2지구 | 보길면 부황리 | 105 | 답 | 460 | 강성일외2 | 자연환경 보전지역 | |
| | 〃 | 105-1 | 답 | 306 | 오동근 | 〃 | |
| | 〃 | 109 | 답 | 380 | 김경남 | 〃 | |
| | 〃 | 110 | 답 | 912 | 강성일외2 | 〃 | |
| | 〃 | 110-1 | 답 | 384 | 〃 | 〃 | |
| | 〃 | 111 | 답 | 403 | 이종채 | 〃 | |
| | 〃 | 112 | 답 | 820 | 강성일외2 | 〃 | |
| | 〃 | 113 | 답 | 1,154 | 강성옥 | 〃 | |
| | 〃 | 114 | 답 | 555 | 조수천 | 〃 | |
| | 〃 | 115 | 답 | 1,878 | 박진석 | 〃 | |
| | 〃 | 116 | 답 | 1,458 | 조기표 | 〃 | |
| | 〃 | 128 | 대 | 291 | 〃 | 〃 | |
| | 〃 | 129 | 전 | 169 | 〃 | 〃 | |
| | 〃 | 127 | 전 | 463 | 〃 | 〃 | |
| | 〃 | 126 | 대 | 126 | 〃 | 〃 | |
| | 〃 | 132 | 대 | 400 | 박맹대 | 〃 | |
| | 〃 | 132-1 | 답 | 1322 | 조기표 | 〃 | |
| | 〃 | 133 | 전 | 331 | 박맹대 | 〃 | |
| | 〃 | 134-1 | 전 | 331 | 김임란 | 〃 | |
| | 〃 | 134 | 전 | 625 | 강주원 | 〃 | |
| | 〃 | 135 | 대 | 479 | 최창원 | 〃 | |
| | 〃 | 136 | 전 | 357 | 최동복 | 〃 | |
| | 〃 | 137 | 전 | 231 | 강성빈 | 〃 | |
| | 〃 | 산74-5 | 임 | 661 | 유상훈 | 〃 | |
| | 〃 | 141-1 | 전 | 365 | 최동복 | 〃 | |
| | 〃 | 141-2 | 전 | 455 | 〃 | 〃 | |
| | 〃 | 142 | 전 | 1,254 | 모동식 | 〃 | |
| | 〃 | 156-1 | 전 | 2,064 | 강석근 | 〃 | |
| | 〃 | 156-2 | 대지 | 79 | 최동림 | 〃 | |

## 27.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4. 3. 2)

| 구 분 | 허가처리 기준 | 비 고 |
|---|---|---|
| 강화외성 외곽 해안방향지역 | 〈제한되는 행위〉<br>• 건축물 · 공작물, 기타시설의 신축 · 개축 또는 증축등 일체 행위<br>• 시설물의 설치 및 성벽훼손을 수반하는 토석채취 행위<br>• 개간 · 매립 · 간척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 | |
| 강화외성 외곽 육지 방향지역 더리미지구 초지진 지구 | ※ 향후, 재검토 결정 예정임 | |

# 서울특별시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업무 처리요령

(사적 제225호 초지진)

## 1.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안 내부지역에 대한 건설공사

■ **관련법규 : 文化財保護法제20조제4호(허가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신청대상: 국가(서울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신청양식:별첨)**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설공사 행위

– 구청(문화재업무담당과)장이 서울시(문화재과) 경유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설공사의 인 · 허가 처리

• 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설공사 행위

– 구청(문화재업무담당과)장이 서울특별시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설공사의 인 · 허가 처리

■ **현상변경허가신청 업무담당부서 : 구청(문화재 업무담당)**

■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설공사에 따른 현상변경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2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각2부

–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참고서류

– 현상변경허가 신청도면 3부

• 서울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

– 서울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대장 각1부

– 현상변경허가 신청도면 8부(시청7부, 구청1부)

• 신청도면의 첨부도서(국가지정 및 서울시지정문화재 :공통)

1) 1200분지 또는 3000분지1 지적도에 대상 문화재 위치와 보호구역 경계를 표시하고 건설공사 대상위치 및 안내도를 표기

2) 현황사진 : 대상 문화재의 보호구역경계지역 현황사진과 건축행위 대상 위치의 주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경사진을 도면에 부착

3)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서 건설공사 위치까지 떨어진 거리와 건축물 높이, 대지경계 건물폭 등과 대지 고저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기하고, 경계지표 등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 표기

4) 배치도(문화재와 건설공사대상위치의 이격거리를 표기),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5) 신청도면규격(30㎝×45㎝)

## ■ 처리절차

•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기타 행위(건설공사 등)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별첨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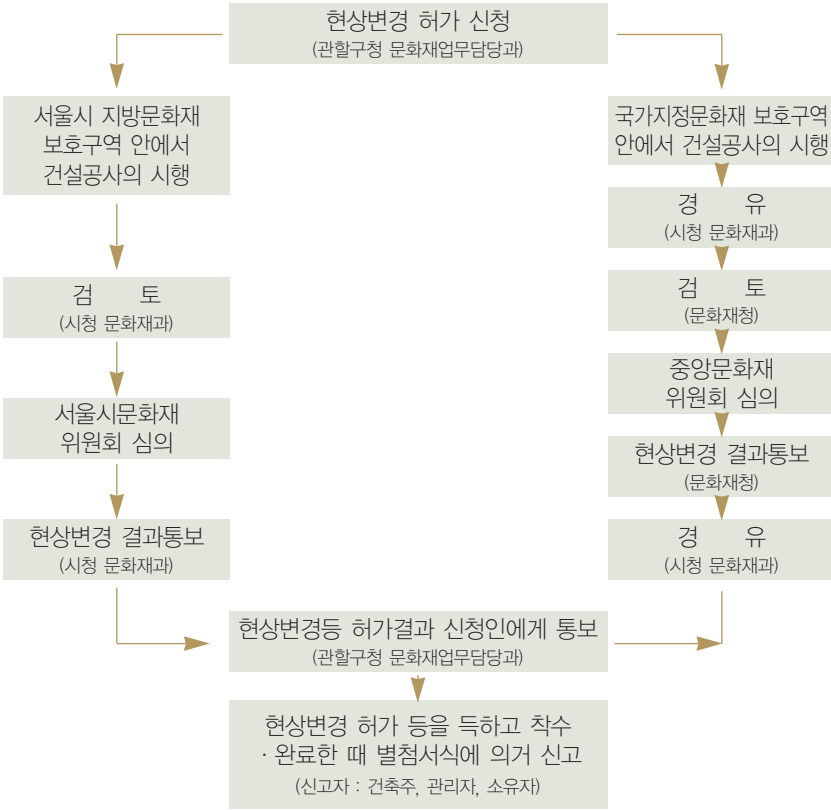

## 2.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밖 외부지역에 대한 건설공사

■ **법적관련근거**

• **文化財保護法제20조제4호(허가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文化財保護法제74조제2항및3항(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2000. 1. 12일자 개정)

– ②문화재(보호구역)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文化財保護法施行令제43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 2000.7.10 개정

– ①법74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문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 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 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 建築法施行令제8조제4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
(문화재보호법제20조)

**• 建築法施行令제8조제5항**

– 허가권자는 법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2(건설 공사시의 문화재보호) :** 2002.7.15.신설

–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
2. 지정문화재 등은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다만, 지정문화재 중 일반묘역, 일반묘역내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는 제외함.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은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표1의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3.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4. 시공중 또는 완성후 사용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 ·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5.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6. 수계 · 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7. 고도경관 또는 역사 · 문화 · 자연환경 저해 여부
8.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
9. 기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③ 행정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지정문화재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별표1의 문화재주변 건축물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검토결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보호구역경계에 직접 접한 필지인 경우

– ④ 건설공사에 대한 인 · 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수계 · 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2. 경관 또는 역사 · 문화 · 자연환경 저해

■ **협의대상**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문화재 협의업무 담당부서** : 구청 인허가 및 공사시행 담당부서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도심재개발 · 재개발 · 재건축담당부서), 토목과, 하수과 등〕

■ **문화재 협의시 제출서류 및 첨부도서**

•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설공사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첨부도서』와 동일함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검토**

•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단 및 처리지침』 참조.

■ **처리절차**

•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설공사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

##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밖 검토지역의 범위 예시도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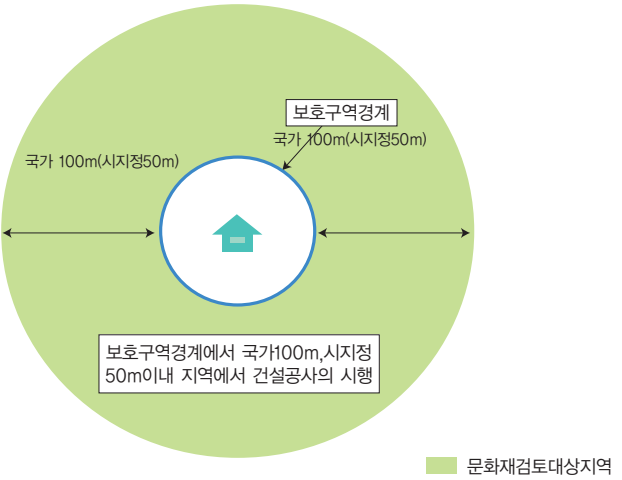


•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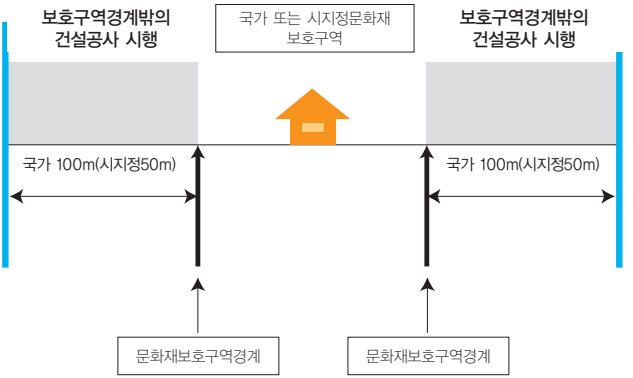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점 확인은 관할구청 지적과에서 문화재 소재 위치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또는 열람 신청하면 알 수 있음.

## ■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별표1](조례 제14조의 2 관련)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 경계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1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

### 1. 4대 문안(內)(문화재별로 2단계 구분 실시)

(1) 기준 1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 선 이내

대 상 : 4대 문안(內)의 아래 문화재

예시)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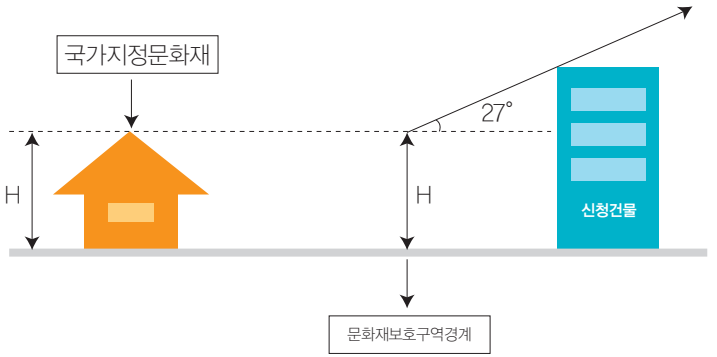


- 숭례문 : 19m, - 흥인지문 : 20m, - 우정총국 : 6.5m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 3.2m
- 경희궁 : 12m, - 운현궁 : 7m, - 서울문묘 : 7m, - 탑골공원 : 12m
- 서울사직단 : 6m, - 서울사직단 정문 : 6m, -정동교회 : 2m(담장기준)

(2) 기준 2 : 문화재 보호구역경계 지표면에서 높이3.6m를 기준하여 앙각 27° 선 이내

대 상 : 4대 문내(內) 소재한 기준 1의 대상 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

예시)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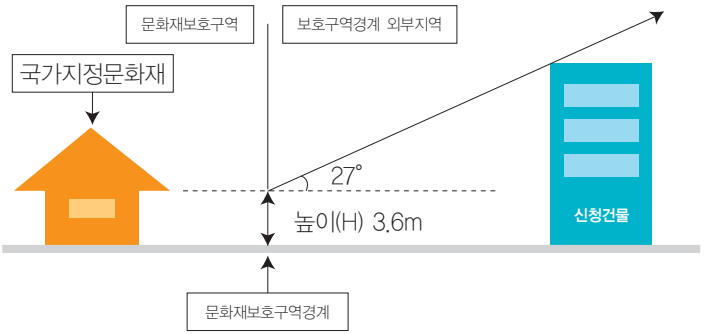


※ 서울성곽은 4대문 내·외 구분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경계 지표면에서 높이 3.6m를 기준하여 앙각 27° 선 이내 적용

## 2. 4대 문밖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를 기준하여 앙각 27° 선 이내

대 상 : 4대문 밖에 소재한 문화재

예시)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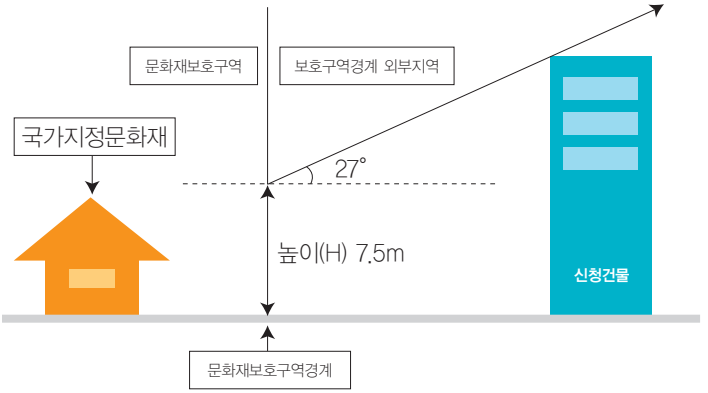

**시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 경계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문화재 외곽경계)에서 5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

**1. 4대문 內 · 外 공통적용**

**2. 기준 :** 문화재 보호구역경계 지표면에서 높이 7.5m를 기준하여 양각 27° 선이내

예시)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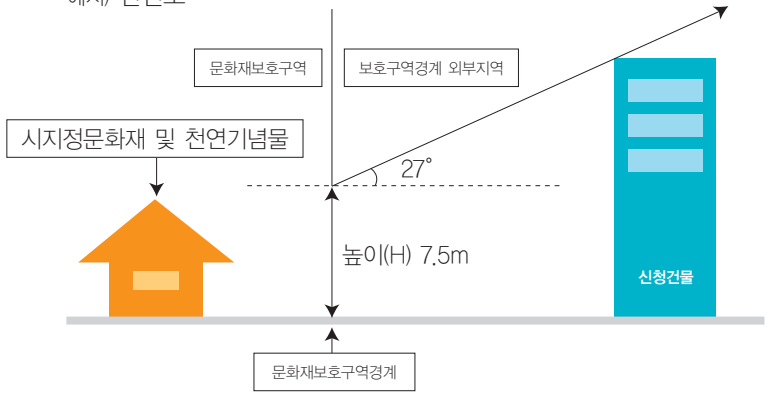


**앙각에 의한 거리별 높이 비교표**

앙각 27°선이란 보호구역 경계지점에서 건축행위를 할 예정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건축물 높이가 2 : 1에 해당하는 선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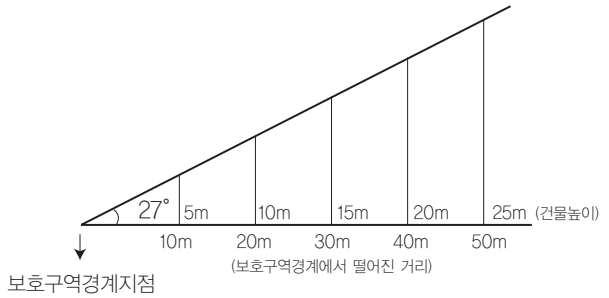

# 파주시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업무 처리요령

(사적 제41호 경주 황오리 고분군)

## 1.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 자체 판단기준

• 최근 공 · 순 · 영능 및 소령원 등 국가사적지 주변에 각종 건축행위로 인하여 "문화재주변현상변경 허가"신청이 폭주하고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일정한 범주내에서 파주시장이 자체 판단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코자 합니다.

## 2. 문화재청 지시내용중 자체판단 모호내용

(문화재청 86743-743(2001. 3. 27) : 별첨

• 지형변경이 없고 **외관이 사적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경우 건립하여도 **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적경관과 조화기준 및 저해요인이 모호함

• 향후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귀 시가 제출한 도면상의 부지조성범위중 주진입로 및 정문(재실앞)에서 가시되지 않으며 부지의 지반고가 해발 40m를 넘지 않는 지역으로 함

– 이 지역에서의 건축규모는 지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상 1층 규모(경사지붕, 건물고 5m이내)의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경우 **건물의 외관(색상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능역 방향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함

• 주진입로 및 정문(재실앞)에서 가시되는 지역에는 건축물의 설치는 제한하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지형변경 없는 부지활용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진입로변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차경토록 함

• 기존 마을내 건축물은 **기존 규모(평균 규모)**를 기준으로 함

• 이 내용은 근간에 부지조성 및 건축이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요함

## 3. 차체판단기준

### 1) 건물의 외관

- 색상 : 미색 회색이나 갈색, 녹색 등 밝은색 계통으로 함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등 원색은 불가)

  ※ 채도 : 6~8도, 명도 : 4~6도
- 외장재료 : 벽돌, 자연석, 지붕은 슬라브를 지양하고 기와나 갈색계통의 싱글 사용

  ※ 반사체 재질(거울재질) 및 콘테이너 박스사용 불가

### 2) 건물의 주변 조경

- 수종은 기존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재래수종을 원칙으로 함

  –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등

  ※ 조경식재시 열식하지 말고 군식할 것
- 능방향은 교목을 심어 차경하여야 함

  ※ 교목 :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고 비교적 위쪽에서 가지가 퍼지는 나무(감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전나무), 큰키나무

### 3) 지형변경

- 도시계획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해당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준용한다.

  ① 높이 50세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을 제외하고,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펼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건축규모 : 기존 마을내 건축물의 평균규모를 말한다**

- 주택 : 200㎡(60평 이내)
- 공장 : 300㎡(90평 이내)

## 4. 적용방법

- 문화재청으로부터 자체 판단토록 지시된 범위내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동 내용을 건축허가부서 및 해당읍면동에 통보
- 허가과 및 읍면동에서는 이 지역일대에서의 건축허가(공장설립승인)신청 접수시 문화체육과와 실무종합심의후 처리

#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단 및 처리지침

– 문화재청 기획86701-864(2001. 9. 8) –

「사적 제136호 참성단」

## 1. 목 적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외곽 일정지역 내에서 행하는 행위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적 처리 도모

## 2. 적용대상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일정지역 내에서 행하는 행위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일정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 3.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판단 및 영향검토 방법

•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위촉한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대학 관련학과 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전임강사 이상)등 관계전문가 2인(*2003. 7. 14 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신설로 3인이상으로 변경) 이상이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문 학예직원 또는 문화재업무 담당 별정직원 중에서 선임가능

– 문화재보호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 실시(서식 별첨)

※ 문화재청장이 일반적 또는 문화재별로 별도의 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다만, 별도지침에서 검토방법 또는 처리절차 등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함)

• 검토대상 건설공사의 지역범위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지역범위에 따름

–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거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특별시의 경우에는 100미터이내, 광역시 도시계획구역의 경우에는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함

## 4. 구체적 검토사항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제정한 조례로 정한 각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5. 판단후 처리절차

-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가 아니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 : 인 허가 등 조치
  - 인 · 허가를 하였더라도 추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시정 조치
-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

첨부 :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서식)

# 문화재 보존 영향평가 검토의견서

## 1. 사업개요

가. 관련 문화재명 :

나. 사 업 명 :

다. 사 업 내 용 :

## 2. 검토

| 검 토 항 목 | 해당여부 | 검 토 의 견 |
|---|---|---|
|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 공사에 해당하는가? | | |
| 2.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 |
| 3.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는 행위로서<br>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이상의 굴착행위인가?<br>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 진동 등을 유반하거나 대기오염 물질 · 화학물질 ·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br>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 증설하는 행위(기존의 지형 · 지세 변경 여부 포함)인가? | | |
| 4. 기타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의무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및 해당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 |
| 5. 건설공사와 관련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마련된 시 · 도조례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 | | |
| 6. 현상변경 처리 기준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 | |
| 〈종합의견〉 | | |

문화재 인접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개진합니다.

20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상기 검토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토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에 의거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9.7.20〉 (앞쪽)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br>시 · 도20일 |

| | | | | | | |
|---|---|---|---|---|---|---|
| 신청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③주 소 | (전화) | | | | |
| 대상문화재 | ④명 칭 | | | | | |
| | ⑤종 별 | | ⑥지정번호 | | ⑦수량 | |
| | ⑧소재지(보관장소) | | | | | |
| ⑨보호구역 · 보호물 | | | | | | |
| ⑩신청사유 | | | | | | |
|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 | | ⑫현상변경 등의내용 | | | |
| 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 | ⑬성 명 | | ⑭주민등록 번 호 | | | |
| | ⑮주 소 | | | | | |
| 공사담당자 | ⑯성 명 | | ⑰기술자 · 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 | | |
| | ⑱주 소 | | | | | |
| 착공및준공 | ⑲착 공 | | | | | |
| 예정연월일 | ⑳준 공 | | | | | |
| ㉑소요경비 | 원 | | ㉒재 원 | | | |
| ㉓기타사항 | | | |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설계도서 · 현장사진<br>2.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동의서<br>3.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서류<br>※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1999.7.20〉 (앞면)

#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
| 30일<br>시 · 도2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③주 소 | (전화) | | | | |
| 대 상 문 화 재 | ④명 칭 | | | | | |
| | ⑤종 별 | | ⑥지정번호 | | ⑦수량 | |
| | ⑧소재지(보관장소) | | | | | |
| ⑨보호구역 · 보호물 | | | | | | |
| ⑩ 허 가 사 항 | | | | | | |
| ⑪ 변 경 사 유 | | | | | | |
| ⑫ 변 경 구 분 | | | ⑥변경방법 | | | |
| ⑭ 기 타 사 항 | | | |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 --- | --- |
| 1. 변경부분의 사진 · 도면 기타 참고서류<br>※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1987. 3. 2〉 (앞면)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착수 · 완료)신고서 | | | | | | 처리기간 2일 시 · 도 1일 |
|---|---|---|---|---|---|---|
| 신청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③주 소 | (전화) | | | | |
| 대상문화재 | ④명 칭 | | | | | |
| | ⑤종 별 | | ⑥지정번호 | | ⑦수량 | |
| | ⑧소재지(보관장소) | | | | | |
| ⑨보호구역 · 보호물 | | | | | | |
| 공사내용 | ⑩ 명 칭 | | | | | |
| | ⑪ 내 용 | | | | | |
| ⑩ 허가사항 | | | ⑬준공(예정)연월일 | | | |
| ⑪ 변경사유 | | | ⑮허가명령내용 | | | |
| ⑫ 변경구분 | | | ⑰공사금액 | | | 원 |
| ⑭ 기타사항 | | | |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8호 ·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br>2. 공사감독관실시상황보고서<br>3. 사진 및 준공도면<br>※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업무처리흐름도

**(문화재청 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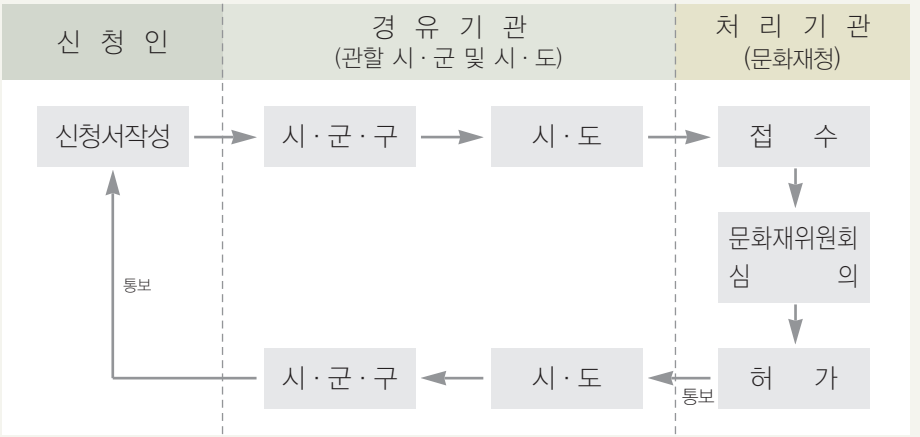


**(시 · 도 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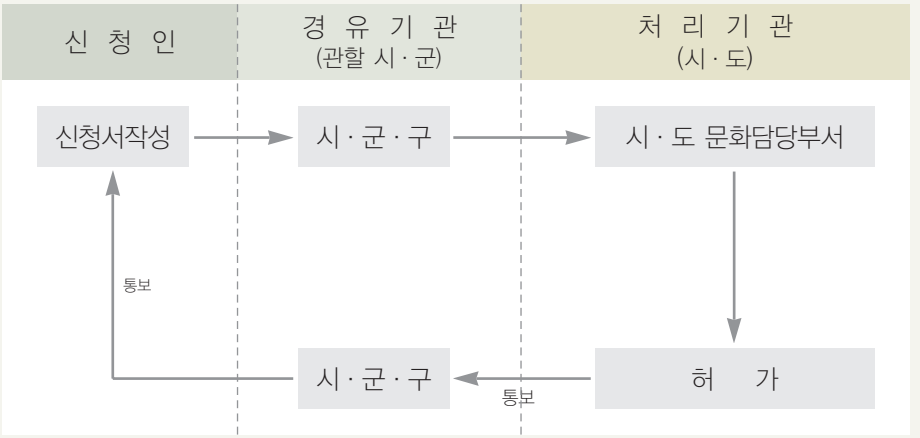

# 현상변경 허가처리 흐름도

현상변경허가신청서 작성제출
(행위자  관할시 · 군 · 구)

↓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접수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 관계전문가 3인 이상 검토
–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서 (시 · 군 · 구)

↓

검토결과 한 항목이라도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토되었을 경우
– 의견서 첨부 현상변경 허가 신청 진달
(시 · 군 · 구 → 시 · 도) *처리기준내 시 · 도처리

↓

허가신청사항 접수검토 및 진달 *기준초과시
(시 · 도 → 문화재청)

↓

허가신청서 접수, 관계전문가검토,
필요시 현지조사(문화재청)

↓

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

↓

허가여부 행정처분 사항 통보
(문화재청 → 시 · 도)

↓

문화재청장의 행정처분 사항 접수 및 시달
(시 · 도 → 시 · 군 · 구)

↓

시달된 허가여부 행정 처분사항 접수 및 통지
(시 · 군 · 구 → 신청인)

↓

신청인에게 허가처분 사항 통지

# 현상변경허가 처리절차도(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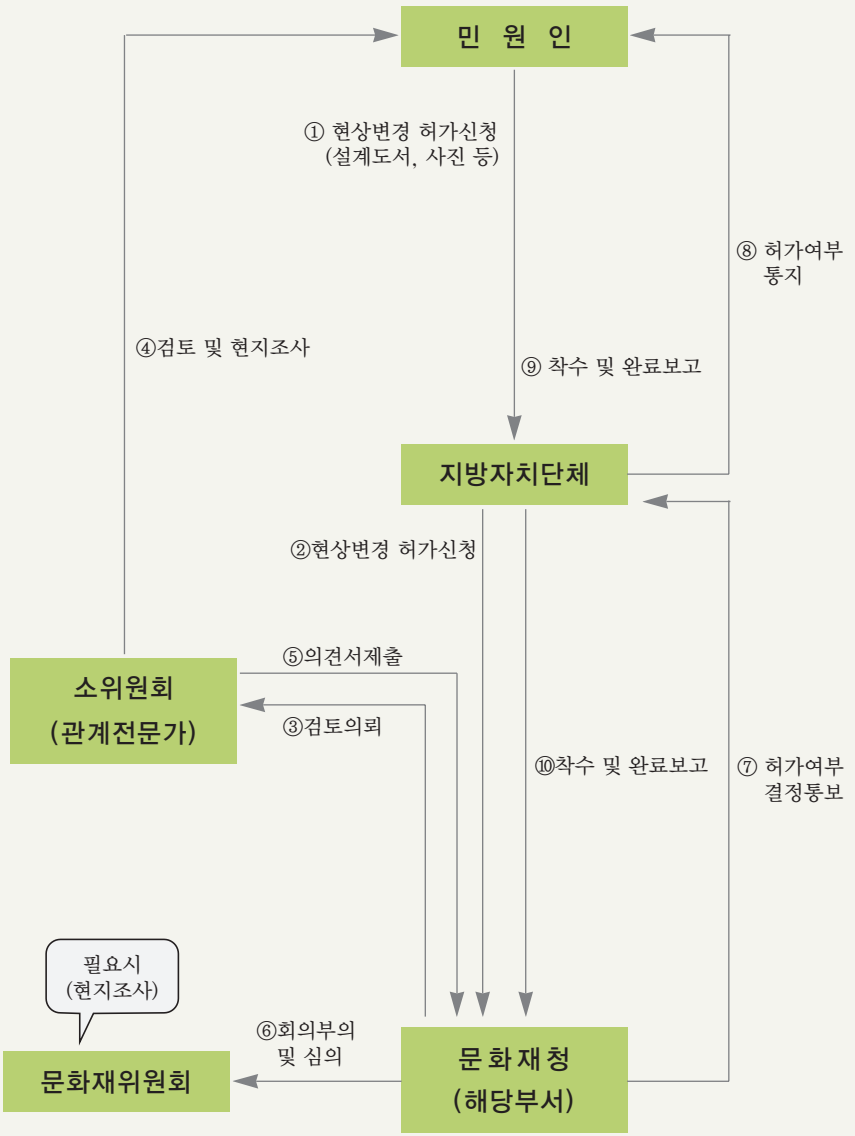

# 현상변경허가 처리절차도(위임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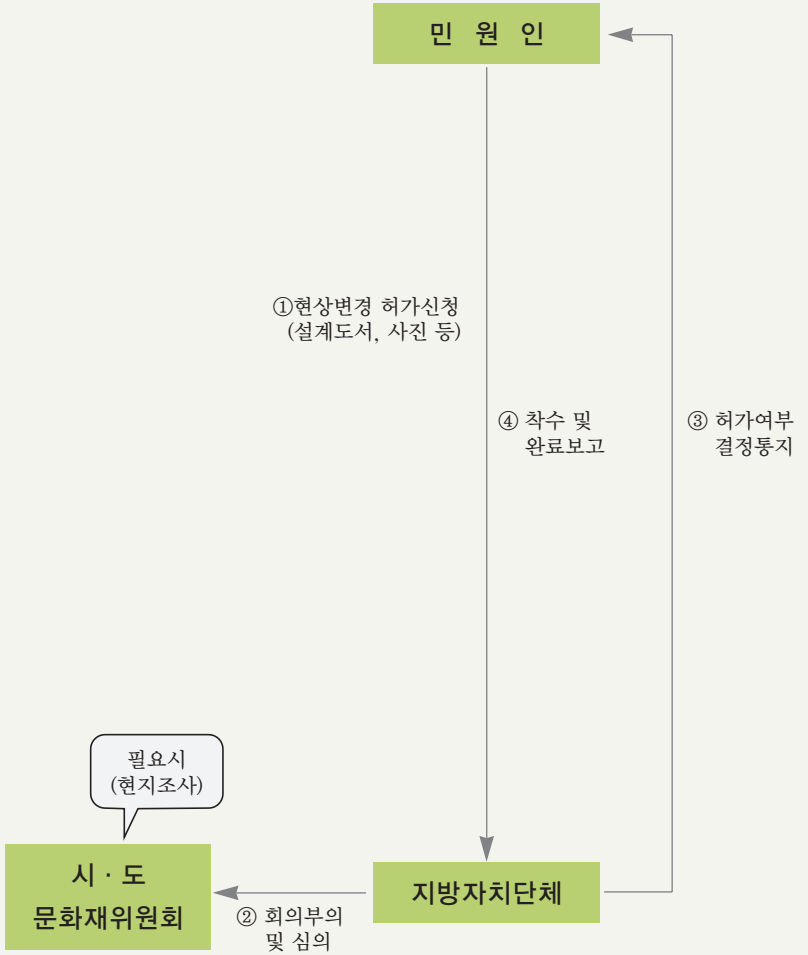

# 현상변경허가 처리절차도(위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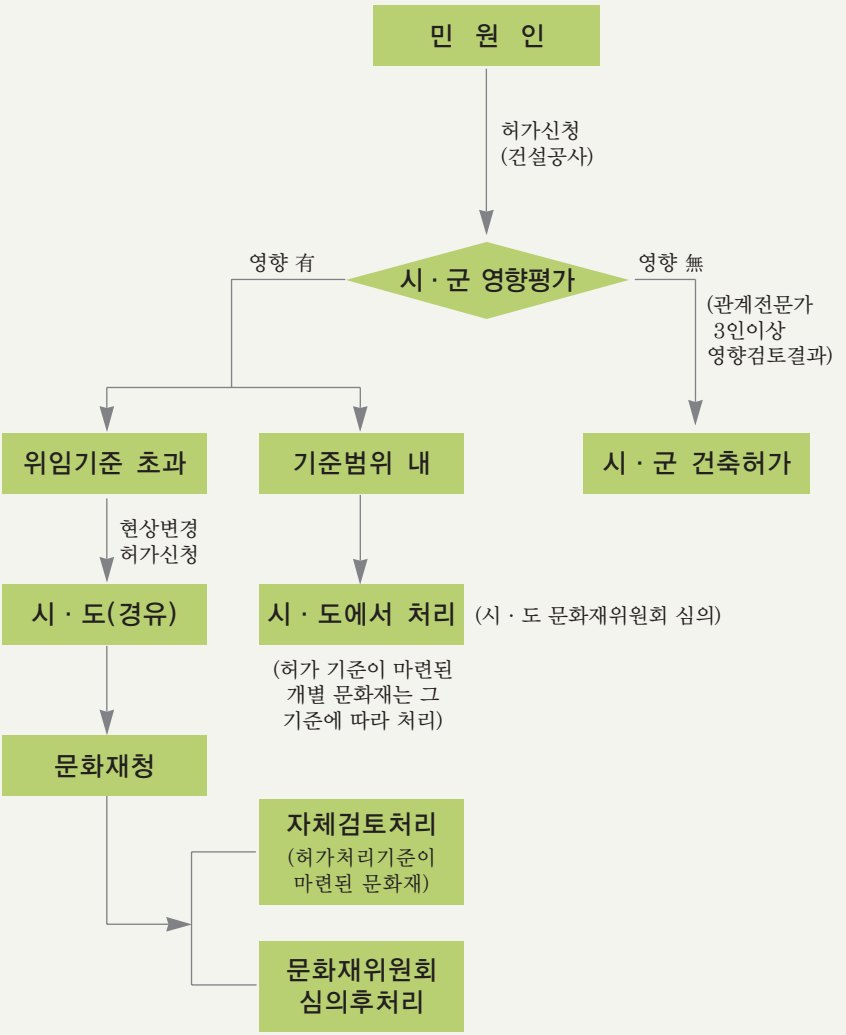

# 용어설명

(사적 제123호 창경궁)

## 1 '문화재' 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정의는 인위적 ·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자료를 의미한다.

- 유형문화재 : 건조물 · 전적 · 서적 · 고문서 · 회화 · 조각 ·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무형문화재 :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기념물 : 사지 · 고분 · 패총 · 성지 · 궁지 · 요지 · 유물포함층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경승지로서 예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것/동물(그 서식지 · 번식지 · 도래지를 포함한다) ·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 광물 · 동굴 · 지질 ·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민속자료 : 의식주 · 생업 · 신앙 ·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 기구 ·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 2 '지정문화재' 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보물 · 중요무형문화재 · 사적 · 사적 및 명승 · 천연기념물 · 명승 · 중요민속자료)와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자료, 문화재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은 붙임**〈별표1〉**서식과 같습니다.

## 3 '문화재 구역(=지정구역)' 이란?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범위)을 말하며, 전적류, 도자기류, 금속공예류 등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나 임야지역에 당해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일정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을 줄여서 '지정구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탑 또는 부도만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만 있고, 문화재 구역(=지정구역)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은 사적, 사적및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주로 부동산문화재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문화재 구역(=지정구역)은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순으로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4 '문화재보호구역' 이란?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2항) 즉,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당해 문화재(문화재구역〈지정구역〉 포함)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당해 문화재 주변의 일정한 토지(임야)에 범위를 설정하여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순으로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화재별 '보호구역지정기준'은**〈별표 2〉**와 같습니다.

## 5 '문화재보호물' 이란?

당해 문화재가 비(碑)나 불상, 전적류, 판각 등 주로 동산문화재일 경우, 이 동산문화재 보호를 위한 비각(碑閣)이나 보호각, 대웅전 등 건조물을 '보호물'로 지정할 경우, 이를 "문화재보호물"이라고 합니다.

## 6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한 '현상변경 행위' 란 무엇인가?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 · 환경 · 경관 · 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7 '문화재위원회' 란?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두는 자문기구입니다. 동 위원회의 조사 ·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조사 · 심의사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 제거 · 이전 등의 명령,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매장문화재의 발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 ·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사항,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4577호, 1970. 2. 7 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문화재위원회는 90인 이내의 위원(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9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건조물문화재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및 민속자료 중 가옥에 관한 사항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건조물 제외), 보상금 및 국가가 매입한 문화재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사적분과위원회** :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 무형문화재, 민속자료(가옥제외)에 관한 사항
-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
-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 매장문화재(토지 ·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에 관한 사항
- **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 : 문화재 보존 · 관리를 위한 법령 · 제도 등에 관한 사항
- **국보지정심의분과위원회** : 국보지정에 관한 사항
- **박물관분과위원회**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 등록취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 설립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

*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

①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1. 우리나라의 역사 · 문화 · 예술 · 산업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2. 지역의 역사 ·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4.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큰 것
5. 전통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별표 1**〉〈개정 2000. 9. 1, 2001. 9. 8〉

## 국가지정문화재의지정기준 (제1조관련)

| 문화재의 종 별 | 지 정 기 준 |
|---|---|
| 1. 보 물 | 1. 건조물<br>가. 목조건축물류<br>당탑 · 궁전 · 성문 · 전랑 · 사우 · 서원 · 누정 · 향교 · 관아 · 객사 · 민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br>나. 석조건축물류<br>석굴 · 석탑 · 전탑 · 부도 및 석종 · 비갈 · 석등 · 석교 · 석계 · 석단 · 석빙고 · 첨성대 · 당간지주 · 석표 · 석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br>다. 분 묘<br>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 · 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br><br>2. 전적 · 서적 · 고문서<br>가. 전적류<br>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 · 한자서적 · 저술고본 ·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br>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br>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br>나. 서적류<br>사경 · 어필 · 명가필적 · 고필 · 묵적 · 현판 · 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br>다. 고문서류<br>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br><br>3. 회화 · 조각<br>가. 형태 · 품질 · 기법 · 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br>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br>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br>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br>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

| 문화재의 종 별 | 지 정 기 준 |
|---|---|
| | 4. 공예품<br>가. 형태 · 품질 · 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br>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br>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br>5. 고고 자료<br>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br>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 · 패총 또는 사지 · 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br>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br>라. 종교 · 교육 · 학예 · 산업 · 정치 · 군사 · 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br>6. 무 구<br>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br>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 |
| 2. 국 보 |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br>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br>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br>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 품질 · 제재 ·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br>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
| 3. 중요무형문화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br>1. 연 극<br>인형극 · 가면극<br>2. 음 악<br>제례악 · 연례악 · 대취타 · 가곡 · 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 · 산조 · 농악 · 잡가 · 민요 · 무악 · 범패<br>3. 무 용<br>의식무 · 정재무 · 탈춤 · 민속무 |

| 문화재의 종 별 | 지 정 기 준 |
|---|---|
| | 4. 공예기술<br>도자공예 · 피모공예 · 금속공예 · 골각공예 · 나전칠공예 · 제지공예 · 목공예 · 건축공예 · 지물공예 · 직물공예 · 염색공예 · 옥석공예 · 수 · 매듭공예 · 복식공예 · 악기공예 · 초고공예 · 죽공예 · 무구공예<br>5. 기타 의식 · 놀이 · 무예 · 음식제조 등<br>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 · 수리 등의 기술 |
| 4. 사 적 | 1. 유사 이전의 유적<br>패총 · 유물포함층 · 주거지(수혈주거지 · 부석주거지 · 동혈주거지 등) · 지석 · 입석 · 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br>2. 제사 · 신앙에 관한 유적<br>사지 · 사우지 · 제단 · 사고지 · 전묘지 · 향교지 · 기타 제사 · 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br>3. 정치 · 국방에 관한 유적<br>성곽 · 성지 · 책채 · 방루 · 진보 · 수영지 · 관문지 · 봉수대 및 유지 · 고전장 · 도읍지 · 궁전지 · 고도 · 고궁 기타 정치 · 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br>4. 산업 · 교통 · 토목에 관한 유적<br>고도(옛길) · 교지 · 뚝 · 요지 · 시장지 · 식물재배지 · 석표 기타 산업 · 교통 · 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br>5. 교육 · 사회사업에 관한 유적<br>서원 · 사숙 · 자선시설 · 석각 기타 교육 · 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br>6. 분묘 · 비등<br>분묘 · 비 · 구택 · 원지 · 정천 · 수석 기타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 5. 명 승 | 1.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br>2. 화수 · 화초 · 단풍 또는 조수 · 어충류의 서식지<br>3. 저명한 협곡 · 해협 · 곶 · 급류 · 심연 · 폭포 · 호소 등<br>4. 저명한 해안 · 하안 · 도서 기타 경승지<br>5.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br>6. 특색 있는 산악 · 구릉 · 고원 · 평원 · 하천 · 화산 · 온천지 · 냉광천지<br>7.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 안에 있는 조형물<br>8.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 |

| 문화재의 종 별 | 지 정 기 준 |
|---|---|
| | 9.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
| 6. 천연기념물 | 1. 동 · 식물<br>가. 한국 특유의 동 · 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 · 생장지<br>나. 석회암지대 · 사구 · 동굴 · 건조지 · 습지 · 하천 · 호소 · 폭포의 소 · 온천 · 하구 · 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 · 식물 또는 동 · 식물군 및 그 서식지 · 생장지 또는 도래지<br>다. 문화 · 민속 · 관상 · 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동 ·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 · 생장지 · 자생지<br>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br>마. 문화적 · 과학적 · 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 명목 · 거수 · 노수 · 기형목<br>바. 대표적 원시림 · 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br>사. 저명한 동 · 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br>아. 생활 · 민속 · 의식주 · 신앙 · 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 · 식물의 원산지<br>자.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br>차. 귀중한 동 · 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br><br>2. 지질 · 광물<br>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br>나. 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한 동굴<br>다.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 · 지질<br>라.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br>마.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br>바. 온천 및 냉광천<br><br>3. 천연보호구역<br>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 · 지구과학적 · 문화적 · 역사적 · 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br>나.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br>다.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br><br>4. 자연현상<br>관상상 · 과학상 · 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

| 문화재의 종 별 | 지 정 기 준 |
| --- | --- |
| 7. 중요 민속자료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br>가. 의 · 식 · 주에 관한 것<br>궁중 · 귀족 · 서민 · 농어민 · 천인 등의 의복 · 장신구 · 음식용구 · 광열용구 · 가구 · 사육용구 · 관혼상제용구 · 주거 · 기타 물건 또는 그 재료 등<br>나. 생산 · 생업에 관한 것<br>농기구 · 어렵구 · 공장용구 · 방직용구 · 작업장 등<br>다. 교통 · 운수 · 통신에 관한 것<br>운반용의 배 · 수레 · 역사 등<br>라. 교역에 관한 것<br>계산용구 · 계량구 · 간판 · 점포 · 감찰 · 화폐 등<br>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br>증답용구 · 경방용구 · 형벌용구 등<br>바. 신앙에 관한 것<br>제사구 · 법회구 · 봉납구 · 우상구 · 사우 등<br>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br>역류 · 점복용구 · 의료구 · 교육시설 등<br>아. 민속예능 · 오락 · 유희에 관한 것<br>의상 · 악기 · 가면 · 인형 · 완구 · 절귀용구 · 도구 · 무대 등<br><br>2. 제1호 각목에 게기한 민속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 · 내용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br>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br>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br>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br><br>3.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br>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br>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br>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br>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br>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 · 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br>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

〔**별표 2**〉 〈개정 2000.9.1〉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3조제1항관련)

| 문화재의 종 별 | 지 정 기 준 |
|---|---|
| 1. 국보 ·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구역 | 1.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20미터 내지 100미터(사찰건조물의 경우에는 2천 미터) 이내의 구역<br>2. 석탑 · 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미터 내지 25미터 이내의 구역<br>3. 석비 · 부도 · 석종 · 석불(건물 내에 안치된 것은 제외한다) 등은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10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구역<br>4. 첨성대는 하부 기단에서 5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br>5. 석빙고는 벽면 상부 지면에서 2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br>6.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의 구역<br>7.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br>8. 당간지주 · 석등 · 노주 · 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br>9.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1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br>10. 기타 국보 ·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각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 2. 사적의 보호구역 | 1. 성곽 등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br>2. 성 · 산성 · 성내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2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br>3. 제방은 성곽에 준한다.<br>4. 왕릉 · 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미터 내지 1천 미터 이내의 구역<br>5. 사지 · 사우지 · 전묘지 · 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br>6. 목조건축물 · 석조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은 국보 · 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한다.<br>7. 기타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 2의2. 명승의 보호구역 |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 문화재의 종 별 | 지 정 기 준 |
|---|---|
| 3. 천연 기념물의 보호구역 | 1. 동물 · 지질광물 · 천연보호구역 · 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br>2.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
| 4. 보호물 | 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은 철책 · 석책 · 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br>2. 동종 · 석비 · 불상 등은 종각 · 비각 · 불각<br>3. 기타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
| 5.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 1.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br>2. 보호물이 석책 · 철책 · 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구역 |

#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보호법 발췌 조문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文化財를 보존하여 民族文化를 계승하고, 이를 活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人類文化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9] | | |
|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文化財"라 함은 人爲的·自然的으로 形成된 國家的·民族的·世界的 遺産으로서 歷史的·藝術的·學術的·景觀的 價値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9.1.29, 2000.1.12〉<br>1. 有形文化財 : 建造物·典籍·書跡·古文書·繪畵·彫刻·工藝品등 有形의 文化的 所産으로서 歷史的·藝術的 또는 學術的 價値가 큰 것과 이에 準하는 考古資料<br>2. 無形文化財 : 演劇·音樂·舞踊·工藝技術등 無形의 文化的 所産으로서 歷史的·藝術的 또는 學術的 價値가 큰 것<br>3. 記念物 : 다음 各目에서 정하는 것<br>가. 寺址·古墳·貝塚·城址·宮址·窯址·遺物包含層등의 史蹟地와 특별히 記念이 될 만한 施設物로서 歷史的·學術的 價値가 큰 것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나. 景勝地로서 藝術的·景觀的 價値가 큰 것<br>다. 動物(그 棲息地·繁殖地·渡來地를 포함한다)·植物(그 自生地를 포함한다)·鑛物·洞窟·地質·生物學的 生成物 및 특별한 自然現象으로서 歷史的·景觀的 또는 學術的 價値가 큰 것<br>4. 民俗資料 : 衣食住·生業·信仰·年中行事등에 관한 風俗·慣習과 이에 사용되는 衣服·器具·家屋등으로서 國民生活의 推移를 理解함에 不可缺한 것<br><br>②이 法에서 "指定文化財"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br>1. 國家指定文化財 : 文化財廳長이 第4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文化財<br>2. 市·道指定文化財 : 第1號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한 文化財중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文化財<br>3. 文化財資料 : 第1號 또는 第2號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한 文化財중 市·道知事가 第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文化財<br>③이 法에서 "保護區域"이라 함은 地上에 固定되어 있는 有形物이나 일정한 地域이 文化財로 지정된 경우 당해 指定文化財의 占有面積을 제외한 地域으로서 당해 指定文化財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區域을 말한다.〈신설 1999.1.29〉<br><br>第2條의2 (文化財保護의 基本原則) 文化財의 보존·관리 및 活用은 原形維持를 基本原則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9]<br><br>第3條 (文化財委員會의 設置) ①文化財의 保存·管理 및 活用에 관한 다음 事項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文化財廳에 文化財委員會를 둔다.<br>〈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br><br>1. 國家指定文化財의 指定과 그 解除<br>2. 國家指定文化財의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과 그 解除<br>3.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保有團體의 인정과 그 解除<br>4. 國家指定文化財의 중요한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修理 및 復舊의 命令<br>**5. 國家指定文化財의 現狀變更 또는 國外搬出의 許可**<br>6. 國家指定文化財의 環境保全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施設의 設置·除去·移轉등의 命令<br>7. 文化財의 등록 및 등록말소<br>8. 埋藏文化財의 發掘<br>9. 國家指定文化財의 保存·管理 또는 活用에 관한 專門的 또는 技術的 事項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事項<br>10.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의 指定 및 管理에 관한 文化財廳長의 勸告事項<br>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文化財廳長이 附議하는 事項<br>②第1項 各號의 事項을 文化財의 種別에 따라 分掌하여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文化財委員會에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br>③文化財委員會의 組織·運營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
| 第13條의2 (文化財의 보존·관리 및 活用計劃의 수립) ①文化財廳長은 市·道知事와의 協議를 거쳐 國家指定文化財의 | 제4조의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보존·관리 및 活用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1999.5.24〉<br>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基本計劃을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市·道知事는 그 基本計劃에 따른 細部施行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br>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 및 細部施行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br>한다[본조신설 1999.1.29] |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br>2. 문화재 주변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br>3. 기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br>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안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br>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br>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9.6.30] | |
| 第20條 (許可事項) 國家指定文化財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事項을 變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改正 1989.12.30, 1993.3.6, | 제15조 (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 | 제18조 (허가신청서) ①법 제20조제1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1995.12.29, 1999.1.29, 1999.5.24, 2000.1.12〉<br>1. 名勝·天然記念物로 指定 또는 假指定된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안에서 動物·植物·鑛物을 捕獲·採取하거나 이를 그 區域밖으로 搬出하는 행위<br>2. 삭제 〈1999.1.29〉<br>3. 國家指定文化財를 拓本 또는 影印하거나 그 保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撮影을 하는 행위<br>4.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保護區域과 天然記念物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現狀을 變更(天然記念物을 標本·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행위 |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3.3.6, 1994.10.7, 1999.5.24, 1999.6.30〉 | 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2000.9.1〉<br>②법 제20조제3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br>③법 제20조제4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br>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br><br>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br>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br>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br>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br>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 | 축 · 개축 ·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br>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br>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 · 간척 · 굴착 · 천공 · 절토 · 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br>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br>마.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 화학물질 ·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br>바. 오수 · 분뇨 · 폐수 등을 살포 · 배출 · 투기하는 행위<br>사. 동물의 사육 · 번식 등의 행위<br>아. 토석 ·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 · 반입 · 반출 · 제거 행위<br>자. 광고물 등의 설치 · 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br>②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2003.7.14〉<br>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 | 공사 등의 행위<br>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br>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br>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br>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br>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br>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br>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 |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br>[전문개정 2000.9.1] |
| 第25條 (行政命令) ①文化財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과 保護區域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管理 ·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事項을 命할 수 있다.<br>〈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br>1. 國家指定文化財의 管理狀況이 그 文化財의 保存上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所有者 · 保有者 · 管理者 또는 管理團體에 대한 一定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br>2. 삭제 〈1999.1.29〉<br>3.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나 管理團體에 대한 修理 기타 필요한 施設의 設置 또는 障碍物의 除去<br>4.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나 管理團體에 대한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필요한 措置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②文化財廳長은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로 하여금 第1項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國家負擔으로 직접 第1項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br>〈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br>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한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신설 1999.1.29, 1999.5.24〉 | | |
| 第27條 (申告事項)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과 保護區域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所有者·保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는 당해 文化財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事實 및 經緯를 文化財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所有者와 管理者가, 第2號의 경우에는 新·舊所有者가 각각 連書로 하여야 한다.<br>〈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br>1. 管理者를 選任 또는 解任 | 제21조 (관리자선임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관리자 선임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3.3.6, 1994.10.7, 1999.5.24, 1999.6.30〉 | 제25조 (신고서) ①법 제27조 제1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br>②법 제27조제2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br>〈개정 2000.9.1〉<br>③법 제27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및 보관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한 때<br>2.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에 변경이 있은 때<br>3. 所有者·保有者 또는 管理者의 姓名이나 住所에 變更이 있은 때<br>4. 國家指定文化財의 所在地의 地名·地番·地目·面積등에 變更이 있은 때<br>5. 保管場所를 變更한 때<br>6. 國家指定文化財가 滅失·盜難 또는 毁損된 때<br>7. 第20條第1號 또는 第2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된 文化財를 搬出한 후 이를 다시 搬入한 때<br>8.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變更許可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文化財의 現狀變更 기타 행위에 着手하거나 完了한 때<br>9. 삭제 〈1999.1.29〉<br>10. 삭제 〈1999.1.29〉<br>11. 動·植物의 種이 天然記念物로 指定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標本이나 剝製를 소유하고 있는 때 | | ④법 제27조제6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의 멸실·도난 또는 훼손의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br>⑤법 제27조제7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7.20〉<br>⑥법 제27조제8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등의 착수 및 완료의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7.20〉<br>⑦법 제27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7.14〉 |
| 第41條 (職權에 의한 調査) ① 文化財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國家指定文化財의 現狀·管理·修理 기타 環境保全狀況에 관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 | 제35조 (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br>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文化財의 所有者·保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에 대하여 그 趣旨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요하는 경우에는 事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br>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協調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文化財의 現狀을 毁損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測量·發掘·障碍物의 除去 기타 調査上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日出전 또는 日沒후에는 所有者·保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br>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br>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行爲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國家가 그 損失을 補償한다 | | |
| 第68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文化財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br>〈改正 1989.12.30, 1993.3.6, | 제43조 (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6.27〉<br>1.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 제50조 (허가등 처리상황 자료제출) ①영 제43조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도지사가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1995.12.29, 1999.1.29, 1999.5.24〉 |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br>2.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다)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br>3.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를 제외한다.<br>가. 건조물의 원형대로의 보수<br>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담장의 원형대로의 보수<br>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신축·개축 또는 증축<br>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및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br>마.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의 설치<br>바. 철책·석책의 설치<br>사. 수목의 가지고르기·병충해방제·시비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br>아.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채취 | 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행위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개정 1989.11.28, 1999.7.20, 2003.7.14〉<br>②삭제 〈1996.7.10〉<br>[본조신설 1987.3. 2]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 4.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 재배 · 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 등을 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br>4의2.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br>5. 법 제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중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br>6.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br>7.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br>8.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br>9. 법 제79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br>[전문개정 2001.6.30] | |
| 第74條 (建設工事時의 文化財 | 제43조의2 (건설공사시 문화 | 제59조의3 (건설공사시의 문화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保護) ①建設工事로 인하여 文化財가 毁損·滅失 또는 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文化財 주변의 景觀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文化財廳長의 指示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措置에 필요한 經費는 당해 建設工事의 施行者가 이를 負擔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br>②行政機關은 文化財의 外廓境界(保護區域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保護區域의 境界를 말한다)의 外部地域에서 施行하고자 하는 建設工事로서 市·道知事가 文化財廳長과 協議하여 條例로 정하는 地域안의 建設工事에 대하여는 그 建設工事에 대한 認·許可등을 하기 전에 당해 建設工事의 施行이 文化財保存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檢討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br>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로 정하는 地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 재의 보호) ①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br>②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설공사가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br>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재보호) ①행정기관이 영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br>2.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br>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br>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br>②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br>③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 〈신설 2003.6.27〉<br>[본조신설 2000.7.10]<br>[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2000.7.10〉] | 을 제시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03.7.14] |
| 第74條의2 (文化財 地表調査)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그 建設工事의 事業計劃 수립시 당해 工事地域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文化財地表調査(이하 "地表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br>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는 당해 建設工事施行者의 요청에 의하여 第4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關聯 專門機關이 수행하며,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地表調査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調査報告書를 당해 事業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를 거쳐 文化財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br>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報告書를 제출받은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적절한 文化財保存對策을 수립하고, 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br>④文化財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存對策(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內容을 포함한다)을 市·道知事에게 | 제43조의3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지표의 원형변경등(절토·복토·굴착·수몰등)의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1.6.30〉<br>1.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br>2.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br>[본조신설 1999.6.30]<br>[제43조의2에서 이동 〈2000.7.10〉]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통보하여야 하며, 市·道知事는 당해 建設工事의 施行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br>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市·道知事를 거쳐 文化財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br>⑥建設工事의 施行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存對策에 포함된 措置內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市·道知事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br>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에 필요한 經費는 당해 사업의 施行者가 부담한다.<br>⑧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 地表調査를 실시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대상 및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1999.1.29] | | |
| 第75條의2 (開發事業에서의 文化財保護)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開發事業을 計劃·施行할 경우 文化財(保護物과 保護區域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1999.1.29]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第7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文化財廳長이 自然公園法에 의한 公園區域 또는 公園保護區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面積이상의 地域을 對象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公園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br>〈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br>1.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一定한 地域을 史蹟·名勝·天然記念物로 指定하는 경우<br>2.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區域을 指定하는 경우<br>3.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하는 경우<br>②自然公園法에 의한 公園區域 또는 公園保護區域안에서 第20條(第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때에는 自然公園法 第23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用 및 사용등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br>③제4조·제6조 내지 제8조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 | 제47조 (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사적의 지정등)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br>1. 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br>2.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경우 : 전지역(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br>②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7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개정 1990.1.3, 1993.3.6, 1999.5.24〉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br>〈신설 2002.12.30〉<br><br>第79條의2 (청문) 文化財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br>〈개정 1999.1.29, 1999.5.24〉<br>1. 第18條의5의 規定에 의한 修理技術者의 登錄取消<br>2. 第18條의7의 規定에 의한 修理技能者의 登錄取消<br>3. 第18條의9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取消<br>4. 第20條 또는 第21條의 규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事項 또는 許可條件을 위반한 때의 許可取消<br>5. 第65條의 규정에 의한 文化財賣買業者의 營業停止<br>[全文改正 1997·12·13]<br><br>第81條 (損傷 또는 隱匿등의 罪) ①國家指定文化財(重要無形文化財를 제외한다)로 指定된 文化財를 損傷·竊取 또는 隱匿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1999.1.29〉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 〈개정 2001.3.28〉<br>1.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建造物을 제외한다)를 손상·竊取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br>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竊取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br>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2千萬원이상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br>〈신설 1999.1.29, 2001.3.28〉<br>1.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現狀變更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天然記念物을 剝製 또는 標本으로 製作한 者<br>2. 第1項·第2項 또는 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文化財를 취득·讓渡·讓受 또는 運搬한 者<br>3. 第2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알선한 者<br>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은닉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절취·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은닉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br>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당해 文化財는 이를 沒收한다. 다만, 沒收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文化財의 鑑定價額을 追徵한다. 〈新設 1999.1.29, 2002.12.30〉<br><br>第83條 (加重罪) ①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휴대하여 第80條 내지 第82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 本條에 정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br>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管理 또는 보호하는 者를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br><br>第85條 (史蹟등에의 溢水罪) 물을 넘겨 文化財廳長이 指定 또는 假指定한 史蹟 ·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이나 保護區域을 浸害한 者는 2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br>〈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br><br>第86條 (기타 溢水罪) 물을 넘겨 第85條에 規定한 것외의 指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나 그 保護區域을 浸害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br><br>第87條 (未遂犯등) ①第80條 내지 第82條·第83條第1項·第85條 및 第86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br>②第80條 내지 第82條·第83條第1項·第85條 및 第8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br><br>第88條 (過失犯) ①過失로 인하여 第85條 또는 第86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br>②業務上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제82조제3항 및 제4항·第85條 또는 第86條의 罪를 犯한 者는 3年이하의 禁錮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文化財를 沒收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br><br>第89條 (무허가행위 등의 죄 〈개정 2002.12.30〉)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개정 2002.12.30〉<br>1.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명승(名勝)·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한 자<br>2. 제20조제4호(제32조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br>3.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br>②제1항 각호의 경우에 그 文化財가 自己所有에 속하는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br>〈개정 1999.1.29, 2002.12.30〉<br><br>第90條 (行政命令違反등의 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第3號의 경우에는 그 物件을 沒收한다.<br>〈개정 1999.1.29, 2002.12.30〉<br>1. 정당한 事由없이 第25條第1項(第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7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br>2.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7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무를 한 자<br>2의2.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br>3.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20條第1號(第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者<br>4. 삭제 〈2002.12.30〉<br>5. 天然記念物(市·道指定文化財중 記念物을 포함한다)로 指定 또는 假指定된 動物의 棲息地·繁殖地·渡來地등에 그 生長에 害로운 物質을 流入하거나 撒布를 한 者<br>②삭제 〈1999.1.29〉<br><br>第91條 (管理行爲妨害등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br>〈개정 1984.12.31, 1999.1.29, 2000.1.12, 2002.12.30〉<br>1. 정당한 事由없이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埋藏文化財의 發掘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br>2. 제16조제4항(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br>3. 제41조제3항 본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br>4.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管理·保存의 責任이 있는 者가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당해 文化財를 滅失 또는 毁損하게 한 者<br>5. 이 法에 의한 補助金을 그 交付目的외의 用途에 사용한 者<br>6. 虛僞의 申告 또는 보고를 한 者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7. 指定文化財로 指定된 區域이나 그 保護區域의 界標를 故意로 損壞·移動·除去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그 區域의 境界를 識別할 수 없게 한 者<br>8. 許可없이 第20條第3號(第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br>8의2.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廳長의 公開制限에 위반하여 文化財를 公開하거나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出入한 者(第5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br>9. 정당한 事由없이 第44條第3項 및 第5項, 第48條第5項, 第74條 또는 第7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 指示 또는 調査에 不應하는 者<br><br>제9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br>1. 제27조제6호 또는 제11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허위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하 이 조에서 같다)<br>2. 제4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3.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br>6.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②제27조제5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br>③제27조제8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br>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br>1.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2.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7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3. 제4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전문개정 2001.3.28] | | |
| 제93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br>〈개정 2002.12.30〉<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br>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br>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br>[본조신설 2001.3.28] | 제4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②문화재청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br>〈개정 1999.5.24〉<br>③문화재청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br>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br>〈개정 1999.5.24〉 | 제6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00.9.1]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 --- | --- | --- |
| 第9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나 財産의 管理에 관하여 第82條 내지 第92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본조신설 1996.6.29] | |

# 문화재 현상변경 실무 안내집

**기획·편집** : 문화재청 사적과 (042-481-4839~4841)
대전광역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http://www.ocp.go.kr
**감수·교정** : 사적과장 박영근
지적사무관 박용기
임업주사 박동석
**인 쇄** : 2004년 5월
**발 행** : 2004년 5월
**발 행 처** : 문화재청 사적과
**인 쇄** : 한국칼라
대전광역시 중구 정동 12-8 (042-255-5774)

* 이 책에 수록된 글과 그림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